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	기			금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제1장 개 요	1
Ⅰ. 총 괄	1
Ⅱ. 세입·세출 결산	2
1. 일반회계	2
1) 세입결산	2
2) 세출결산	3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
1) 세입결산	6
2) 세출결산	6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
1) 세입결산	7
2) 세출결산	7
Ⅲ. 기금 결산	8
1. 보훈기금	8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

IV. 재무제표	10
----------------	----

1. 재정상태표	10
----------------	----

2. 재정운영표	12
----------------	----

3. 순자산변동표	14
-----------------	----

V. 성과보고서	16
----------------	----

1. 성과체계	16
---------------	----

2.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7
----------------------------	----

제2장 검토의견	23
----------------	----

I. 일반회계	23
---------------	----

1) 보상금지급관리: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 정지 제도 운영 개선 필요 ...	23
--	----

2)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 계약 관련 예산 전액 미집행	29
--	----

3)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 저조	33
--	----

4) 위탁병원 진료: 연례적 이용 등 예산 조정 집행 개선 필요	39
---	----

5)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보조사업자 정산 지연 및 보조금 교부 부적정 ..	44
--	----

6)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콘텐츠 구축 사업 관련 수의계약 지양 필요 ...	49
--	----

7) 국내외사적지탐방: 국내외 사적지 탐방 실적 저조 및 탐방국 다양화 필요	56
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전주지중화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미흡	63
9)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사업: 집행실적 저조 및 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70
10)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예산 편성 목적과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운용 필요	77
11) 국립영천호국원 등 확충사업: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지연에 따른 적기 안장 문제 등	83
가)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지연에 따른 적기 안장 문제	84
나)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예산의 연례적 이월 및 불용 문제	87
12)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제복의 영웅사업 적극적 홍보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89

II. 기금 93

1. 보훈기금 93

1)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93
2)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98
가) 연간 반복적 구매 물품에 대한 경쟁입찰 필요	98

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는 과도한 국외출장 경비 집행 부적정 ..	103
3) 보훈요양원 건립 :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108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14

제1장 개 요

I. 총 관

- 국가보훈부의 재정은 일반회계, 2개의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의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예산현액(총계기준)은 총 6조 8,757억원으로 일반회계 6조 676억원, 특별회계 178억원, 기금 7,903억원이며,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음.

< 국가보훈부 재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회계(A)	5,351,905	5,502,267	5,669,751	5,741,416	6,067,569
▪ 일 반 지 출(a)	5,275,702	5,425,578	5,588,925	5,652,568	5,974,918
▪ 내부거래지출	76,203	76,689	80,826	88,848	92,65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B)	20,831	18,789	17,860	16,990	15,531
▪ 일 반 지 출(b)	20,831	18,789	17,860	16,990	15,5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C)	2,018	2,083	2,133	2,240	2,270
▪ 일 반 지 출(c)	2,018	2,083	2,133	2,240	2,270
보훈기금(D)	803,950	665,220	835,966	682,307	651,547
▪ 일 반 지 출(d)	137,166	143,648	147,979	138,126	140,595
▪ 내부거래지출	150,725	170,781	180,949	180,805	150,609
▪ 여유자금운용	516,059	350,791	507,038	363,376	360,34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E)	155,014	137,000	161,346	137,808	138,762
▪ 일 반 지 출(e)	84,646	89,435	95,063	98,473	102,707
▪ 여유자금운용	70,368	47,565	66,283	39,335	36,055
총 계(A+B+C+D+E)	6,333,718	6,325,359	6,687,056	6,580,761	6,875,679
전년대비 증감률(%)	4.2	△0.1	5.7	△1.6	4.5
총지출(a+b+c+d+e)	5,520,363	5,679,533	5,851,960	5,908,397	6,236,021

Ⅱ.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억 7,300만원이며, 78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 9,8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7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41억 8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23년 일반회계 세입징수 현황 >

(단위: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B/A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재산수입	654	489	488	99.8%	-	1
▪ 관유물대여료	143	140	139	99.3%	-	1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11	349	349	100.0%	-	-
경상이전수입	8,539	7,160	2,845	39.7%	207	4,107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88	29	24	82.8%	-	5
▪ 변상금및위약금	51	0.3	0.3	100.0%	-	-
▪ 보상금 과오급금 회수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8,400	7,131	2,821	39.6%	207	4,102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45	161	161	100.0%	-	-
▪ 면허료및수수료	3	3	3	100.0%	-	-
▪ 잡수입	342	158	158	100.0%	-	-
관유물매각대	35	4	4	100.0%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35	4	4	100.0%	-	-
합 계	9,573	7,814	3,498	44.8%	207	4,109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6조 299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343억원과 예비비 34억원을 포함한 6조 676억원임.
- 이 중 세출예산현액 대비 99.0%인 6조 56억원이 지출되고, 215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05억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지출액 중 78.8%인 4조 7,314억원이 보훈급여금 등 ‘보훈심사 및 보상’사업으로 지출되었으며, 12.5%인 7,514억원이 ‘보훈의료복지’사업으로, 나머지 8.7%인 5,227억원이 국립묘지·보훈행정 등의 사업비로 집행되었음.

< 2023년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프로 그램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비 비	예 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용	이용	이체					
합 계	6,029,898	34,261	±37,440	±52,915	-	3,410	6,067,569	6,005,574	21,516	40,479
보훈심사 및 보상	4,795,782	1,155	±35,847	△52,915	-	-	4,744,022	4,731,442	-	12,580
보훈단체 지 원	38,126	-	-	-	-	-	38,126	37,707	-	419
보훈의료 복 지	702,063	75	-	49,815	-	-	751,953	751,441	-	512
생활안정 지 원	29,721	-	±6	-	-	-	29,721	29,509	56	156
보훈선양	95,093	2,718	±47	-	-	-	97,811	91,827	2,437	3,547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99,725	30,070	±743	-	-	-	129,795	93,501	17,777	18,517
제대군인 지 원	51,351	158	±14	3,000	-	-	54,509	50,138	1,077	3,294
보훈행정	125,386	85	±783	100	-	3,410	128,981	127,358	169	1,454
회계기금 간 거래	92,651	-	-	-	-	-	92,651	92,651	-	-

<2023년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비 비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용	이용	이체					
합 계	5,923,167	34,196	36,671 △36,926	52,815 △52,915	-	475	5,957,483	5,896,578	21,506	39,399
보훈보상금	3,325,248	-	△35,847	△28,400	-	-	3,261,001	3,258,090	-	2,911
수당	1,454,423	-	34,431	△24,515	-	-	1,464,339	1,455,461	-	8,878
수시보상금	9,042	-	1,416	-	-	-	10,458	10,418	-	40
보훈심사	2,064	-	-	-	-	-	2,064	1,465	-	599
등록심사	5,005	1,155	-	-	-	-	6,160	6,009	-	151
보훈단체지원	38,126	-	-	-	-	-	38,126	37,707	-	419
교통시설 이용지원	10,729	75	-	-	-	-	10,804	10,793	-	11
의료지원	665,982	-	-	49,615	-	-	715,597	715,360	-	237
고엽제지원	2,767	-	-	200	-	-	2,967	2,966	-	1
의료환경개선	22,585	-	-	-	-	-	22,585	22,322	-	263
교육지원	26,813	-	-	-	-	-	26,813	26,710	-	103
취업지원	2,908	-	6 △6	-	-	-	2,908	2,800	56	52
독립기념관	29,067	-	-	-	-	-	29,067	29,067	-	-
보훈정신함양	19,630	-	-	-	-	-	19,630	19,020	-	610
현충시설	37,289	2,718	47 △47	-	-	-	40,007	35,035	2,437	2,535
기념사업	9,107	-	-	-	-	-	9,107	8,704	-	403
공훈발굴및 국가유공자 등예우	11,091	-	241 △48	-	-	-	11,284	9,871	-	1,413
국립묘지 조성및관리	88,634	30,070	502 △695	-	-	-	118,511	83,629	17,778	17,104
제대군인 생활안정	25,972	9	14 △14	3,000	-	-	28,981	27,205	350	1,426
참전제대군인 명예선양	25,379	150	-	-	-	-	25,529	22,933	727	1,869
청관사임차 및시설개선	5,380	-	-	-	-	343	5,723	5,629	-	94
일반행정	3,704	19	△155	-	-	-	3,568	3,253	117	198
보훈서비스 지원	4,707	-	14 △114	-	-	-	4,607	4,538	-	69
정보화	4,864	-	-	-	-	132	4,996	4,942	41	13
회계기금간 전출	92,651	-	-	-	-	-	92,651	92,651	-	-

<2023년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비 비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 액
				전용등	이 용					
합 계		106,731	65	1,360 △1,105	100	2,935	110,086	108,996	10	1,080
인 건 비	소 계	95,224	-	601 △1,095	-	-	94,729	94,463	0	266
	처 본 부	34,838	-	601	-	-	35,439	35,433		6
	지 방 청	60,386	-	△1,095	-	-	59,291	59,031		260
기 본 경 비	소 계	11,507	65	759 △10	100	2,935	15,357	14,533	10	814
	처본부총액 인건비성경비	2,300	-	333	-	90	2,723	2,524		199
	처본부운영	3,374	23	269	100	2,845	6,611	6,097	10	505
	지방청총액 인건비성경비	822	-	42	-	-	864	833		31
	국립묘지운영	1,849	28	12	-	-	1,889	1,852		37
	서울지방청운영	1,287	3	72	-	-	1,362	1,354		7
	부산지방청운영	532	3	3	-	-	538	530		8
	대전지방청운영	454	-	22	-	-	476	465		11
	대구지방청운영	383	4	△10	-	-	377	367		10
	광주지방청운영	506	4	6	-	-	516	510		6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LPG 세금 인상분 보조금 부당사용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금으로,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00만원을 수납하고, 6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23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 >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B/A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61	28	22	78.6	-	6
기타재산수입	33	17	11	64.7	-	6
기타경상이전수입	28	11	11	100.0	-	-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가유공자등 차량지원 155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61.3%인 95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60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내역 >

(단위: 백만원)

사 업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용	이용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15,531	-	-	-	15,531	9,520	-	6,011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기관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2023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 >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B/A
합 계	75	154	154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	75	154	154	100.0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 2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22억 7,0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 2023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제주보훈업무지원	2,270	2,270	2,270	-	-

Ⅲ. 기금 결산

1. 보훈기금

- 2023회계연도 보훈기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 규모는 6,515억 4,700만원이었으나, 수입과 지출 실적은 계획대비 86.7%인 5,648억 4,700만원으로, 그 주요 원인은 골프장 매각 미실현에 따른 매각 대금이 미회수 되었기 때문임.

< 2023년 보훈기금 수입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계획(A)	실적(B)	B/A(%)
합 계	651,547	564,847	86.7	합 계	651,547	564,847	86.7
자 체 수 입	189,947	78,902	41.5	사 업 비	139,716	129,173	92.5
정부내부수입	208,079	209,075	100.5	기금운영비	879	827	94.1
여유자금회수	253,521	276,870	109.2	정부내부지출	150,609	150,588	100.0
				여유자금운용	360,343	284,259	78.9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2023회계연도 동 기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 규모는 1,387억 6,200만원이었으나, 수입과 지출 실적은 계획대비 107.9%인 1,497억 300만원(순계 기준)으로, 그 주요 원인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3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계획(A)	실적(B)	B/A(%)
합 계	138,762	335,655 (149,703)	241.9 (107.9)	합 계	138,762	335,655 (149,703)	241.9 (107.9)
자 체 수 입	7,818	8,895	113.8	사 업 비	102,609	102,262	99.7
정부내부수입	92,651	92,651	100.0	기금운영비	98	86	87.8
여유자금회수	38,293	234,109 (48,158)	611.4 (125.8)	여유자금운용	36,055	233,307 (47,355)	647.1 (131.3)

IV.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¹⁾

-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자산은 2조 2,408억원으로, 전년 대비 0.4억원(0.0%)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기투자증권 연기금 투자폴 투자금액 감소 등 투자자산이 1,251억원(68.6%) 감소하였으나, 단기 투자증권 연기금 투자폴 단기지분증권 취득 등 유동자산이 1,016억원(38.9%) 증가하였고, 국립임실호국원 충령당 건립, 세종 국가보훈광장 조성, 88골프장 보수공사 등에 따른 신규 취득 및 자본적지출 등에 의해 일반유형자산이 211억원(1.2%)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부채는 5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3.4%) 감소하였는데, 이는 미지급금 등 유동부채가 21억원(42.9%)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9억원(0.1%) 증가한 2조 1,840억원임.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산 계	2,240,814	2,240,854	△40	0
I.유동자산	362,447	260,887	101,560	38.9
II.투자자산	57,324	182,440	△125,116	△68.6
III.일반유형자산	1,798,956	1,777,867	21,089	1.2
IV.무형자산	14,420	14,329	91	0.6
V.기타비유동자산	7,667	5,331	2,336	43.8
부채 계	56,789	58,763	△1,974	△3.4
I.유동부채	2,779	4,869	△2,090	△42.9
II.장기차입부채	-	-	-	-
III.장기충당부채	2,550	2,434	116	4.8
IV.기타비유동부채	51,460	51,461	△1	0
순자산 계	2,184,025	2,182,090	1,935	0.1
I.기본순자산	848,492	848,492	-	-
II.적립금 및 잉여금	663,957	647,827	16,130	2.5
III.순자산조정	671,576	685,771	△14,195	△2.1

2. 재정운영표²⁾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 6조 135억원이 발생하였음.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5조 9,593억원, 관리운영비 1,459억원, 비배분비용 19억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40억원, 비배분수익 316억원, 비교환수익 등 288억원으로 구성됨.
-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수익 등을 가감하여 산출되며 전년 대비 3,378억원 증가한 6조 413억원이며, 이는 주로 국가보훈부 사업예산 증가 등에 기인함.
- 프로그램순원가는 보훈부 사업예산 등인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차감한 5조 9,252억원임.

총 1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보훈심사 및 보상프로그램 4조 7,311억원과 보훈의료복지 8,198억원 등임.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에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925,223	5,602,735	322,488	5.8
가. 프로그램 총원가	5,959,273	5,638,055	321,218	5.7
나. 프로그램 수익	34,050	35,320	△1,270	△3.6
II. 관리운영비	145,901	138,392	7,510	5.4
III. 비배분비용	1,901	1,660	241	14.5
IV. 비배분수익	31,638	39,250	△7,612	△19.4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6,041,386	5,703,537	337,849	5.9
VI. 비교환수익 등	27,881	24,706	3,175	12.9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013,505	5,678,831	334,674	5.9

3. 순자산변동표³⁾

- 2023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1,82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8억원 감소하였음.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6조 135억원,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조 296억원, 조정항목 △142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제재금수익 및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6조 337억원과 국고이전지출 및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40억원으로 구성됨.
-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9억원, 자산재평가이익 △103억원, 기타순자산의증감 0.1억원 등으로 구성됨.

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 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순자산변동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2,182,090	2,222,912	△40,822	△1.81
II. 재정운영결과	6,013,505	5,678,831	334,674	5.9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6,029,636	5,672,777	356,859	6.3
IV. 조정항목	△14,195	△34,768	20,573	59.2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2,184,025	2,182,090	1,935	0.1

V. 성과보고서

1. 성과체계

- 국가보훈부 임무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 수준의 예우와 지원으로 보답하고, 이분들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한다”이고, 비전은 “국가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5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프로그램 목표, 20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목표 및 성과지표 현황 >

구 분	전 략 목 표	프로그래 목 표	성과지표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5	9	20	19	1	-
비율(%)	-	-	100	95	5	-

2.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2023년 성과 달성 총괄현황 >

(단위 : 개, %)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도 평균
5	9	20	3	12	5	98.4%
		100.0%	15.0%	60.0%	25.0%	

○ 프로그램목표 9개에 대하여 총 20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 중 3개는 초과달성, 12개는 달성, 5개는 미달성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보상기반을 구축한다(보훈행정)(I -3)”의 ‘이동보훈팀 지원실적’ 등 3개 지표를 초과 달성하고,
- “공정하고 합리적인 등록심사와 보상을 실시한다(보훈심사및보상)(I -1)” 중 ‘등록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와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기금증식)(II -2)” 중 ‘88골프장 내장객수’ 등 5개 지표를 미달성함.

<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 >

구 분	'22년 달성	'23년 달성
전략목표Ⅰ : 국가유공자의 소득 및 자립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등록심사와 보상을 실시한다(Ⅰ-1)		
▪ 등록관련 행정소송 패소율 (단위:%)	○	X
▪ 신체검사 만족도 (단위:점)	○	○
□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킨다(Ⅰ-2)		
▪ 신규취업자 고용유지율 (단위:%)	신규	○
▪ 대부지원 만족도 (단위:점)	○	○
□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Ⅰ-3)		
▪ 이동보훈팀 지원실적 (단위:건)	○	◎
▪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개선요청 반영률 (단위:%)	○	○
전략목표Ⅱ : 국가유공자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의료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훈복지 강화로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Ⅱ-1)		
▪ 보훈의료서비스 수혜율 (단위:%)	○	○
▪ 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점)	○	X
□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Ⅱ-2)		
▪ 자기자본 이익률 (단위:%)	○	X
▪ 88골프장 내장객수 (단위:명)	○	X
전략목표Ⅲ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예우를 다하여 보답한다		
□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등록, 포상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시책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인다(Ⅲ-1)		
▪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 (단위:점)	○	○
▪ 국립묘지 방문자 수 (단위:천명)	신규	○
전략목표Ⅳ :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Ⅳ-1)		
▪ 제대군인 취.창업률 (단위:%)	○	○
▪ 참전군인에 대한 존경도 (단위:점)	○	X

전략목표 V : 보훈선양활동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한다

☐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선양 활동을 활성화한다(V-1)

■ 보훈문화활동 참여의향도 (단위:점)	○	○
■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인원 (단위:천명)	○	◎
■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자 추천도 (단위:점)	○	○

☐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V-2)

■ 보훈단체선양활동 참가자수 (단위:명)	○	◎
■ 보훈단체선양활동 언론보도실적 (단위:회)	◎	○
■ 지방보훈회관 이용자 만족도 (단위:점)	○	○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달성 세부 현황 >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1년	'22년	'23년
전략목표Ⅰ：국가유공자의 소득 및 자립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공정하고 합리적인 등록심사와 보상을 실시한다							
보훈심사및보상	①등록관련 행정소 송 패소율 (%)	결과	(연간)행정소송 패 소건수/연간 행정 소송 건수)x100	목표	신규	7.0	7.0
				실적	7.4	7.0	8.1
				달성률	-	100.0%	84.3%
	②신체검사 만족도 (점)	결과	신체검사 수검자 대상 설문조사서 (외부전문기관)	목표	85.4	86.4	87.2
				실적	86.1	86.5	87.4
				달성률	100.8%	100.1%	100.2%
프로그램목표：Ⅰ-2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킨다							
생활안정지원	①신규취업자 고용 유지율 (%)	결과	신규 취업자 중 6개 월 이상 고용유지자 (명)/신규 취업자 (명)x100	목표	-	신규	80
				실적	-	신규	90.4
				달성률	-	-	113.0%
	②대부지원 만족도 (점)	결과	지원자 대상 전문조 사기관 설문조사	목표	77.5	78.5	80.0
				실적	82.4	80.9	81.3
				달성률	106.3%	103.1%	101.6%
프로그램목표：Ⅰ-3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보훈행정	①이동보훈팀 지원 실적 (건)	산출	이동민원실 민원접수 건 + 현장 업무지원 건	목표	신규	21,500	22,100
				실적	20,278	22,030	31,277
				달성률	-	102.5%	141.5%
	②통합보훈 정보시 스템 개선요청 반 영률 (%)	결과	(개선요청 처리완료 건 수 / 개 선 요 청 건 수)x100	목표	92.5	94.0	97.5
				실적	96.6	96.8	98.3
				달성률	104.4%	103.0%	100.8%
전략목표Ⅱ：국가유공자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의료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훈복지 강화로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보훈의료복지	①보훈의료서비스 수혜율 (%)	결과	당해년도 보훈·위탁 병원 서비스 이용자 수 ÷ 당해년도 말 의료서비스대상자 수) × 100	목표	25.1	25.5	25.9
				실적	25.3	25.5	26.3
				달성률	100.8%	100.0%	101.5%
	②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 (점)	결과	(재가복지서비스만족 도 + 보훈요양원서 비스만족도) 가중치 평균값	목표	91.6	93.5	93.3
				실적	93.5	93.7	93.2
				달성률	102.1%	100.2%	99.9%
프로그램목표：Ⅱ-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기금증식	①자기자본 이익률	결과	(당기순이익/자기자	목표	63.0	64.9	70.6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1년	'22년	'23년
	(%)		본)x100	실적	69.6	71.8	60.1
				달성률	110.5%	110.6%	85.1%
	②88골프장 내장객 수 (명)	결과	당해연도 내장객수	목표	175,660	178,333	182,058
				실적	184,380	187,005	179,976
			달성률	105.0%	104.9%	98.9%	
전략목표Ⅲ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예우를 다하여 보답한다							
프로그램목표 : Ⅲ-1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등록, 포상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시책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인다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①국가유공자 예우 에 대한 국민평가 (점)	결과	대국민 설문조사	목표	78	80.7	81
				실적	79.2	82.68	81.96
				달성률	101.5%	102.5%	101.2%
	②국립묘지 방문자 수 (천명)	산출	국립묘지 수합 통계	목표	-	신규	8,421
				실적	6,097	8,338	8,715
				달성률	-	-	103.5%
전략목표Ⅳ :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 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지원	①제대군인 취·창업 률 (%)	결과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취·창업한 제대 군인 비율	목표	65.3	66.1	66.9
				실적	65.4	66.3	66.9
				달성률	100.2%	100.3%	100.0%
	②참전군인에 대한 존경도 (점)	결과	설문조사(외부기관 위탁)	목표	56.3	88.8	89.3
				실적	88.7	88.9	89.1
				달성률	157.5%	100.1%	99.8%
전략목표Ⅴ : 보훈선양활동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한다							
프로그램목표 : Ⅴ-1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선양 활동을 활성화한다							
보훈문화	①보훈문화활동 참 여의향도 (점)	결과	{(평균결과치-1)÷(척도 수-1)}x100	목표	58.95	61.9	67.7
				실적	60	66.5	67.7
				달성률	101.8%	107.4%	100.0%
	②보훈정신계승 연 수·체험활동 참가 인원 (천명)	산출	Σ프로그램별 참가인원	목표	240	319	150
				실적	310	321	271
				달성률	129.2%	100.6%	180.7%
	③보훈정신계승 연 수·체험활동 참가 자 추천도 (점)	결과	ΣXi÷Yi · Xi:프로그램별 추천점수 · Yi:프로그램수	목표	61.0	62.8	64.2
				실적	62.8	63.4	64.2
				달성률	103.0%	101.0%	100.0%
프로그램목표 : Ⅴ-2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1년	'22년	'23년
보훈단체지원	①보훈단체선양활동 참가자수 (명)	산출	보훈단체 주관 보 훈선양활동 참가 인원 합산	목표	신규	18,462	19,000
				실적	신규	18,499	32,455
				달성률	-	100.2%	170.8%
	②보훈단체선양활동 언론보도실적 (회)	산출	보훈단체 주관 보 훈선양활동 언론 보도 건수 합산	목표	240	282	470
				실적	388	431	552
				달성률	161.7%	152.8%	117.4%
	③지방보훈회관 이 용자 만족도 (점)	결과	건립지원지역 보 훈회관 이용자 대 상 자체 표본 설 문조사	목표	86.0	87.0	87.2
				실적	86.2	87.1	87.4
				달성률	100.2%	100.1%	100.2%

제2장 검토의견

I. 일반회계

1. 세출

- 1) 보상금지급관리: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 정지 제도 운영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상금지급관리’ 사업은 보훈급여금 등의 과오급금 회수와 신상 조사, 보훈급여금 체계개편 및 업무개선을 위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사업으로,⁴⁾ 2023년도 예산현액은 1억 1,600만원으로 이 중 1억 1,5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보상금지급관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상금지급관리	116	116	-	-	116	115	-	1	110

자료: 국가보훈부

4) 세부사업: 보상금지급관리(1137-311)

(2) 검토의견

보훈보상대상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거나 보상 정지를 위한 위원회 심의요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상 정지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 관계 법령⁵⁾에 따르면 현재 보훈대상자가 형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는 경우 실형기간 동안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되고 있고, 그에 더해 범죄 사유가 품위 손상행위에 해당하면 추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 뿐만 아니라 의료·주택공급·대부지원 등 각종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형·보심위 의결에 따른 보상 정지 구분 >

구분	금고 이상 실형	보심위 심의·의결
정지기간	실형 기간	3년 이내
정지대상	보훈급여금 정지	보상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상 정지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보상 정지는 총 315건이며, 구체적 사유는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보상의 정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보상의 정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보상의 정지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예우의 정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지원의 정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4조(예우의 정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예우의 정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원정지)

법·명령 위반 45건, 품위손상행위 23건, 금고 이상 실형 247건
으로 확인이 됨.

< 보상 정지 사유별 보상 정지 처분 현황 >

(단위 : 건)

구분	계	정지 처분 사유		
		보상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보훈급여금 정지
		법·명령 위반 ⁶⁾	품위손상행위 ⁷⁾	금고 이상 실형 ⁸⁾
2019년	52	-	1	51
2020년	51	-	-	51
2021년	63	14	4	45
2022년	74	30	2	42
2023년	75	1	16	58
계	315	45	23	247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형법상
처벌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 수준이 낮더라도 품위손상행위
여부에 따른 보상 정지가 적용되는 경우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는 등
제재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나타남.⁹⁾

6) 신체검사에서 부정확한 방법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등 해당

7) 유공자 신분을 이용한 부당한 혜택 강요·알선 행위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8조 등)

8) 형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실형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 정지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2항 등)

9)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

- A는 청소년수련원에 불을 질러 건축물을 소훼하고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고 말하며 당구공으로 상해를 가하는 한편, 교통사고 후 별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기간만 보상 정지
- B는 파출소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징역 8개월의 실형 기간 외에 추가 정지 2년 등 총 2년 8개월의 보상 정지

- 참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품위손상행위에 적용되는
실형 기간 외 추가 보상 정지 현황에 따르면 추가 보상 정지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6개월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이 됨.

< 최근 5년간 추가 보상 정지 현황 >

사례	선고 형량	정지기간= 실형기간	품위손상행위로 인한 정지	
			정지기간	의결 고려사유
A	징역1년	1년	3년	동종 범죄로 6차례 실형
B	징역6월	6개월	1년	이외 3차례 범죄
C	징역10월	10개월	1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D	징역6월	6개월	1년	동종범죄 재범
E	징역8월	8개월	2년	이외 3차례 범죄, 수사기간 중 반복적인 범죄
F	징역6월	6개월	6개월	건강상태, 생계곤란사유 고려
G	징역8월	8개월	2년	동종 범죄 등 3차례 범죄
총7건	-		평균 1년 6개월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도 운영과 관련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첫째, 보훈대상자의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법원의 형량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고, 둘째, 보훈대상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일선 보훈(지)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요청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하였음.¹⁰⁾

< 보심위 의결 누락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

연번	형사처벌	범죄사실	위반 법률	보상 정지 현황	
				실형	보심위 의결
1	징역 1년 10월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흥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 행사	제144조(특수공무방해)	1년 10개월	보심위 의결 누락 (심의요청 ×)
2	징역 8월	집회 참석 중 경찰관을 밀어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257조(상해)	8개월	
3	징역 1년 6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위조 및 실습비 부정이득 등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357조(배임수증제),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1년 6개월	
4	징역 1년 2월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 및 폭력 행사	형법 제257조(상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년 2개월	
5	징역 1년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 입히고 구급활동 방해	형법 제257조(상해), 소방기본법 제16조제2항(소방활동방해 금지) ¹¹⁾	1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재작성

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06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형평성 고려해 보상 정지해야)

11) 1~4까지의 사례는 공무집행방해가 명백히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데도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

○ 판결문에 공무집행방해로 명시된 행위에 대하여 보상 정지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업무 처리로 보이고, 누락 사례 5에서와 같이 판결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명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에 따라 심의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¹²⁾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품위손상행위에 따른 추가 보상 정지 적용 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판결문에 따른 범죄인정사실 등을 고려하여 범죄사유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위 손상 행위 관련 보상 정지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

지 않은 것에 반해 해당 건의 경우 판결문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가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미요청한 것으로 확인함. 그러나 실질적인 범죄사실로 볼 때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2) 실질적인 범죄사실로 볼 때 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 심의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2)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 계약 관련 예산 전액 미집행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요건 및 상이의
정도 등을 심사하고 의학적 연구자료의 수집·분석 등을 위한
사업으로,¹³⁾ 2023년도 예산현액은 20억 6,400만원으로 이 중 14억
6,5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2,064	2,064	-	-	2,064	1,465	-	599	1,620
공무직 등 인건비	450	450	-	-	450	309	-	141	462
보훈심사 운영	1,146	1,146	-	-	1,146	1,144	-	2	1,146
보훈심사홈페이지 관리	12	12	-	-	12	12	-	-	12
심사지원 전문 인력 용역	456	456	-	-	456	-	-	456	-

자료: 국가보훈부

13) 세부사업: 보훈심사위원회 운영(1142-327)

(2) 검토의견

회계연도 개시 전 직제 증원에 따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된 일반
 용역비가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부처 간
 협의 등 진행 상황이 적시에 설명·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세부사업 중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 내역사업은 보훈심
 사의 전문성 확보와 동시에 보훈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보훈심사
 지원 전문인력 증원을 통해 적기에 국가유공자 예우 실현을 목적
 으로 하는 2023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일반용역비 4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음.

< 일반용역비 세부산출내역 >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기본급	241,269	2,010천 원×10명×12월
상여금	10,000	1,000천 원×10명
급식비	16,800	140천 원×10명×12월
자격수당	3,600	30천 원×10명×12월
시간외근무수당	34,632	(2,010천 원/209시간*1.5)×20시간×10명×12월
연차수당	4,618	(2,010천 원/209시간*8시간)×10명×6일
복리후생비	4,000	400천 원×10명
보험료	30,401	4대보험료×10명
퇴직금	23,677	10명
일반관리비	22,139	6%
이윤	23,467	6%
부가가치세	41,460	
합 계	456,063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예산이 전액 불용된 이유는 회계연도 개시 전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2. 12. 13.)됨에 따라 ‘전문경력관 다군’이 10명 증원되어 심사인력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¹⁴⁾

< 직제개정 전후 보훈심사위원회 정원표 >

(단위: 명)

구분	직제개정 전 (‘22.7.19. 기준)	직제개정 후 (‘22.12.13.)	비고
고공단	5	5	-
3·4급	2	2	-
4급	2	2	-
5급	10	10	-
6급	10	10	-
7급	20	19	△1 (통합정원 운영)
8급	2	1	△1 (통합정원 운영)
9급	3	3	-
전문경력관	4	14	+10 (소요정원 반영)

자료: 국가보훈부

- 특정 목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산 반영이 확정된 사업이 회계연도 시작 전 다른 형태로 그 목적이 실현됨으로써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부실한 사업 계획이나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으로 인한 불용과 비교할 때, 사업 추진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음.

14) 국가보훈부는 2022년 9월 ‘정원 증원(전문경력관)을 위한 수시 직제개정 요구’를 시작으로 개정 노력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은 2022년 9월부터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시행규칙 개정이 예산심의 전에 조속히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고려되었다면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이 확실시되는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 전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관계부처 간 신속한 협의 및 정부 내 진행 절차에 관한 예산 심사과정에서의 적시 설명·보고 등을 통해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사업계획 대비 이행을 저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등록관리’ 사업은 전·공상이자 등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판정 및 등록을 결정하고, 대통령 명의 증서, 국가보훈 등록증 발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¹⁵⁾ 2023년도 예산현액은 61억 6,000만원으로 이 중 60억 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등록관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등록관리	5,005	5,005	1,155	-	6,160	6,009	-	151	6,732
신체검사	1,579	1,579	-	-	1,579	1,579	-	-	1,697
증서관리	1,818	1,818	-	-	1,818	1,818	-	-	2,920
생활수준조사	20	20	-	-	20	20	-	-	20
금융통지	9	9	-	-	9	6	-	3	9
공무직 등 인건비	846	846	-	△3	843	748	-	96	1,431
등록기록관리	147	147	1,155	-	1,302	1,302	-	-	84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572	572		3	575	537	-	38	571
통합보훈서류 입력 시스템 유지보수	14	14	-	-	14	-	-	14	-

자료: 국가보훈부

15) 세부사업: 등록관리(1143-328)

(2) 검토의견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여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정된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증서관리’ 사업 중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내내역사업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하고, 휴대전화에도 저장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같이 도입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임.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승격과 함께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및 선순위 유족 66만명을 대상으로 고령자부터 연령별 순차적으로 교체발급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의 202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24년 말까지 종료하도록 그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2개년도로 나누어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계획 >

구분	발급시기	대상	계획
시범발급	'23. 6.~7.	신규등록자	2천명
정식발급	'23. 8.~9.	1935년 이전 출생자	7만명
	'23. 10.~12.	1936년~1945년생	11만명
	'24. 1.~3.	1946년~1949년생	12.7만명
	'24. 4.~6.	1950년~1955년생	12.4만명
	'24. 7.~9.	1956년~1965년생	11.4만명
	'24. 10.~12.	1966년 이후 출생자	11.8만명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실시한 교체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대비 36.6%로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현황 >

(단위: 명, %)

구분	발급시기	대상	계획(A)	실적(B)	발급률(B/A)
시범발급	'23. 6.~7.	신규등록자 등	2,000	8,280	37.2*
정식발급	'23. 8.~9.	1935년 이전 출생자	70,000	18,489	
	'23. 10.~12.	1936년~1945년생	110,000	39,886	36.3
합 계			182,000	66,655	36.6

* 6~9월 발급 계획과 실적을 합산하여 환산

* (연령별 10부제 예시) 1925. 6. 25.생 국가유공자의 경우, '23. 8~9월 기간 내에 5, 15, 25일 중 관할지(방)청을 방문하여 발급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원활한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도 6.5.~7.31.까지 신규등록자, 순위변경자 등을 대상으로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두었으며, 8월 이후 고령자부터 연령 별 10부제로 정식 발급을 하게 되어 발급률이 다소 낮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분기와 2분기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계획대비 발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2024년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현황 >

(단위: 명, %)

발급시기	대상	계획(A)	실적(B)	발급률(B/A)
'24. 1.~3.	1946년~1949년생	127,000	46,621	36.7
'24. 4.~6.	1950년~1955년생	124,000	35,280	28.5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사업 예산 변동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B-A)	비 고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일반수용비)	1,500	2,092	592	· 카드 단가 상승분 등 반영
발급부품 및 발급기기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81	453	372	· 발급기 부품·소모품, 기기 유지보수 등 소요 반영

구분	2023년도 (A)	2024년도 (B)	증감 (B-A)	비 고
S/W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	187	187	· 시스템 관리 용역비 반영
발급기기 교체 (자산취득비)	44	44	-	· 전년 동결
교체발급인력 인건비 (일용임금)	641	1,097	456	· 23년 7개월, 24년 12개월분 반영
4대 보험료 등 (고용부담금)	71	214	143	· 23년 7개월, 24년 12개월분, 퇴직금 반영
합 계	2,337	4,087	1,750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동 내역사업의 경우 2024년 종료를 목표로 그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을 실제 담당하는 인력과 관련한 인건비의 경우 2023년과 비교할 때, 2024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교체발급인력 인건비의 경우 사업 시행 기간을 고려하면 34명분의 인건비 예산은 동일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23년 및 2024년 교체발급인력 현황 및 예산액 >

구분	인원(명)	예산액(백만원)	비고
2023년	34	712	7개월분('23.6. ~ '23.12.)
2024년		1,311	12개월분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이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후에는 예정된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음.

4) 위탁병원 진료(2150-366): 연례적 이용 등 예산 조정 집행 개선 필요

(1) 사업 및 계획안 개요

□ ‘위탁병원 진료’는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¹⁶⁾ 2023년도 예산현액 2,753억 8,700만원 중 2,753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2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위탁병원 진료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위탁병원 진료	267,441	267,441		7,946	275,387	275,385		2	256,315
우수위탁병원 인증제	15	15	-		15	15	-	-	-
위탁진료관리비	2,383	2,383			2,383	2,383			2,383
위탁병원진료비	265,043	265,043		7,946	272,989	272,987		2	253,932

자료: 국가보훈부

16) 세부사업: 위탁병원 진료(2150-366)

(2) 검토의견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전용 등의 예산조정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실소요 예산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위탁병원 진료’사업은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매년 보상금 등에서 이·전용 등을 실시하여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참전명예수당 사업에서 79억 4,600만원을 “이용”하여 위탁병원 진료 보상금에 집행하였음.

< 최근 5년간¹⁷⁾ 위탁병원 진료 사업 이·전용 등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사유
		세부사업		세부사업	
'19	내역변경	보훈병원진료 (2150-365)	8,101	위탁병원진료 (2150-366)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20	이용	보상금(1132-300), 참전명 예수당(1133-307) 등 21개 사업	25,189	위탁병원진료 (2150-366)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21	이용	보상금 (1132-300), 참전명예수당(1133-307)	15,526	위탁병원진료 (2150-366)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23	이용	참전명예수당 (1133-307)	7,946	위탁병원진료 (2150-366)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자료: 국가보훈부

17)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보훈대상자의 의료기관 내원이 감소하여 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 3,072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그런데 위탁병원진료 사업의 진료비 예산 부족으로 타 사업 예산 등을 조정·충당하는 집행 관행에 대해서는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문제 제기 및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에도 79억 4,600만원에 달하는 예산 조정이 발생하였음.

○ 국회는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위탁병원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진료비를 편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였으나, 같은 문제점이 2023년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위탁병원 진료비 연례적 이·전용에 대한 최근연도 국회 결산 지적 >

대상연도	지적요지	시정요구사항
2019결산	○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의 부정확한 추계로 의료지원 사업에서 매년 대규모의 이·전용·조정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병원 지정 확대 및 진료인원의 증가로 동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함	○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조정을 통해서 편성액과 집행액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탁병원 진료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주의)
2020결산	○ 지속적인 위탁병원 지정 확대, 대상자 연령 증가 등으로 진료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의 부정확한 추계로 위탁병원진료 사업에서 매년 이·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음 - 예산액 대비 2018년 12.1%, 2019년 3.3%, 2020년 11.1%를 이·전용으로 충당함	○ 국가보훈처는 위탁병원 진료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진료비를 편성하여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 (제도개선)

대상연도	지적요지	시정요구사항
2021결산	○ 진료단가 및 진료인원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여 지원금 부족에 따른 이·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음 - 위탁병원 진료 사업에서 진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021년 155억원 이용, 2018년 296억원 내역변경 등 연례적인 이용·내역변경이 발생함	○ 국가보훈처는 적정 진료단가를 반영하고 진료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발췌

-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조치에 대해 매년 제출한 조치결과에서 각 연도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진료인원 및 단가 등 관련 데이터를 충실히 분석·검토하고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였음.

< 위탁병원 진료비 이·전용 시정요구 조치결과 제출 내용 >

대상연도	조치결과	조치상황
2019결산	○ 진료비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 최근 진료실적치 등 기본 데이터를 충실히 검토하고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소요가 반영되도록 노력 * 보훈의료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진료비 산정체계 연구용역('19.5~10월) ○ 21년도 위탁병원 진료예산은 전년대비 3.6% 증액 편성, 향후에도 적정진료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20년 226,806 → '21년 234,985백만원(+8,179백만원)	○ 조치중 ('21.4.30.기준)

대상연도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0결산	○ 각 진료대상별(국비, 감면) 진료현황 및 인원 등 추계를 분석하여 적정 진료비가 '23년 예산에 편성되도록 추진 ※ '22년 중기재정계획 제출(1월말)	○ 조치중 ('22.4.30기준) - 조치기한: '22년 12월
2021결산	○ 대상별 진료인원 및 단가 등 관련 데이터를 충실히 분석·검토하고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소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중 ('23.4.30기준) - 조치예정일: '23년 12월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정부 제출) 중 발췌

□ 국가보훈부가 위탁진료비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예산 편성 및 국회 예산 심의 등 다른 주체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이같이 예산 조정 집행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국가보훈부의 자료 분석 및 설득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조정 집행에 대한 국회 결산 지적 취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실소요 예산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당초 편성 목적과 달리 대규모의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5)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2156-383): 보조사업자 정산 지연
및 보조금 교부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은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치과치료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병원시설 낙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으로,¹⁸⁾ 2023년도 예산 119억 8,500만원이 전액 집행됨.

< 2023년도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11,985	11,985	-	-	11,985	11,985	-	-	-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매년 보조금을 교부하고 실적보고서 미제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8)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2156-383)

□ 국가보훈부는 2018년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치과병원 증축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2023년 12월 18일부터 치과병원 건물에서 진료를 재개하였음.

□ 동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총 230억 6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음.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에 투입된 사업비(국비) >

(단위 :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586	4,299	2,718	2,418	11,985

자료: 국가보훈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9)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2개월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3년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2024년 2월말까지 정산을 마친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공단은 2023 회계연도에 대한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2024년 7월 1일에 제출하였고, 보조금이 지급된 2019년부터 제출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기를 살펴봤을 때,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없었으며, 특히 2019년, 2021년, 2022년의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보고서가 제출되었음.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현황 >

회계연도	제출기한	제출일
2019년	2020.2.29.	2021.2.24.
2020년	2021.2.28.	2021.8.24.
2021년	2022.2.28.	2023.3.27.
2022년	2023.2.28.	2024.6.27.
2023년	2024.2.29.	2024.7.1.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²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정

2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

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안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²¹⁾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의 서류를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공단의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실적보고서 미제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는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판단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기초자료로서 정부의 보조금 잔액 및 이자정산, 차년도 보조금 교부 여부의 결정 등에 활용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자료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향후 이와 같은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기한 내에 정산을 마쳐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6)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콘텐츠 구축 사업 관련 수의계약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독립기념관 전시·연구, 교육·문화사업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²²⁾ 2023년도 예산현액은 290억 6,700만원으로 전액 집행²³⁾되었음.

< 2023년도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0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독립기념관운영 및 활성화	29,067	29,067	-	-	29,067	29,067 (27,841)	-	-	28,176
경상비	11,212	11,212	-	-	11,212	11,212 (11,212)	-	-	11,381
기본사업비	13,847	13,847	-	-	13,847	13,847 (13,509)	-	-	12,861
활성화사업비	4,008	4,008	-	-	4,008	4,008 (3,120)	-	-	3,934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동 사업 진행 후 매년 입찰업체 부족으로 인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 세부사업: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3144-333)

23) 전액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은 278억 4,100만원임.

□ “독립기념관 콘텐츠 구축 사업”은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1억 4,500만원 편성되었고 그 중 1억 4,450만원이 집행되었음.

< 독립기념관 콘텐츠 구축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액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액	계약금액=집행액	계약업체	계약방식
2020년	259.7	259.7	A	수의계약
2021년	236.9	230	B컨소시엄	수의계약
2022년	266.4	265	B컨소시엄	수의계약
2023년	145	144.5	D	수의계약

자료: 독립기념관

- 그런데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과정 및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 계약 모두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이후 단일 응찰로 유찰된 후 재입찰 공고 없이 제안서 평가 등을 실시한 이후 입찰 참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됨.

< 독립기념관 콘텐츠 구축 사업 계약과정 >

구분	사업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 체결
2020년	·공고명: 2020년 콘텐츠 구축사업 ·제안공모 시행보고(5/4) ·제안공모 공고(5/18~6/8) - 공고처: 조달청 나라장터 - 사전규격공개 포함	·제안서 평가 계획보고(6/9) ·제안서 평가 실시(6/10) - 입찰업체: 1개 업체 - 평가항목: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위원: 5명(외부3, 내부2) - 평가결과: 80.87점(적격)	·계약 의뢰(6/15) ·계약 체결 (6/18~11/30)
2021년	·공고명: 2021년 콘텐츠 구축사업 ·제안공모 시행보고(4/19) ·제안공모 공고(4/20~5/10) - 공고처: 조달청 나라장터 - 사전규격공개 포함	·제안서 평가 계획보고(5/13) ·제안서 평가 실시(서면평가*, 5/14) - 입찰업체: 1개 업체 - 평가항목: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위원: 5명(외부3, 내부2) - 평가결과: 90.67점(적격)	·계약 의뢰(5/18) ·계약 체결 (5/28~11/30)
2022년	·공고명: 2022년 콘텐츠 구축사업 ·제안공모 시행보고(4/7) ·제안공모 공고(4/8~4/27) - 공고처: 조달청 나라장터 - 사전규격공개 포함	·제안서 평가 계획보고(4/29) ·제안서 평가 실시(서면평가*, 5/2) - 입찰업체: 1개 업체 - 평가항목: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위원: 5명(외부3, 내부2) - 평가결과: 88점(적격)	·계약 의뢰(5/4) ·계약 체결 (5/10~11/30)
2023년	·공고명: 2023년 콘텐츠 구축사업 ·제안공모 시행보고(5/18) ·제안공모 공고(5/19~6/12) - 공고처: 조달청 나라장터 - 사전규격공개 포함	·제안서 평가 계획보고(6/16) - 입찰업체: 1개 업체 ·제안서 평가 실시(6/19) - 평가항목: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위원: 6명 (외부3, 내부2, 옴부즈만1) - 평가결과: 91점(적격)	·계약 의뢰(6/23) ·계약 체결 (6/28~10/31)

* 코로나 19 대응관련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 조치방안 2단계+a 적용에 따라
온라인 등비대면 방식 회의 개최

자료: 독립기념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재공고 입찰 이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⁴⁾

□ 그런데 독립기념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적용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해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됨.

□ 독립기념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 이후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고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 단독 입찰(유찰) 이후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

2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고 있음.

□ 그러나 고시규정을 근거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입찰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 「국가계약법」 제7조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²⁵⁾ 이는 수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 한시적·특례적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 성질, 계약업체의 업종 등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한편, 독립기념관 콘텐츠 구축 사업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25)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따르면,²⁶⁾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의 입찰공고문을 보면 이조차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매년 입찰업체의 부족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입찰공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독립기념관은 지금까지와 같은 국가계약법령의 예외

-
- 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 ⑥ 삭제
-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규정에 기댄 관성적·반복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사업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국가계약법령의 원칙인 경쟁입찰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7) 국내외사적지탐방: 국내외 사적지 탐방 실적 저조 및 탐방국 다양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내외사적지탐방사업’은 청소년, 청년, 교사 등에게 국내외 사적지 탐방을 통해 생생한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²⁷⁾ 2023년도 예산현액은 23억 5,900만원으로 이중 23억 2,500만원이 집행되고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내외사적지탐방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내외 사적지탐방 (3145-403)	2,359	-	-	-	2,359	2,325	-	34	1,303 (이관)
청소년, 청년 및 교원 등 탐방지원	799	-	-	-	799	799	-	-	
보훈현장탐방	780	-	-	-	780	779	-	1	
현충시설탐방	780	-	-	-	780	747	-	33	

※ '23년 유사 탐방사업 예산 통합 : 보훈현장탐방(3145-401), 현충시설탐방(3146-406)

※ '24년 예산부터 '국내외사적지 탐방(3145-403)'세부사업이 폐지되고, '보훈문화조성(3145-401)' 내역사업으로 이관·편성

자료: 국가보훈부

27) 세부사업: 국내외사적지탐방(3145-403)

(2) 검토의견

국외 탐방국 대부분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치우쳐 있어 동 사업의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외 탐방국의 다양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국내외사적지 탐방 실적을 보면, 2019년 578명, 2020년 908명, 2021년 1,046명, 2022년 330명이고, 2023년은 8,345명이 탐방을 실시하였음.

< 최근 5년간 국내외사적지탐방사업 실적 >

연도	지역		대상	기간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2023년	국내	현충시설 등 국내 사적지	청소년, 청년 등 일반인	연중 (당일~2박3일) *244회 운영	7,890	1,560
		강원,경상권 보존사적지	교원 (교장, 교감 교사 등)	7.26.~10.20. (2박3일) *4회 운영	70	736
	국외	중국	청년 (대학생 등)	7.3.~9.7. (5박6일) *3회 운영	330	
		카자흐스탄	청소년, 청년 등 일반인	7.29.~8.4. (5박7일)	35	
		일본	독립유공자 후손	2.7.~2.10. (3박4일)	20	34
	소 계				8,345	2,330
2022년	국내	강원,경상,전라 3개권역별 보존사적지	청년 (대학생 등)	7.26~8.3 中 (2박3일) 17회 운영	237	490
		강원,경상,전라 3개권역별 보존사적지	교원 (교장, 교감 교사 등)	8.9~10.28 (2박3일) 4회 운영	64	
	국외	미국, 프랑스	국내탐방 우수 활동자	12.17~12.24	29	
	소 계				330	490
2021년	국내	현충시설 등 국내	일반시민	4.30~11.30	60	50

연도	지역		대상	기간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사적지	보훈교육원이수 교원	4.14~12.30	20	120
			보훈문화 확산기여자	4.14~12.30	42	
	국내	현충시설 등 국내 사적지	청소년, 대학생, 국가유공자 등 일반국민	6.1~12.15	16	35
				5.1~9.12	79	20
				8.26~9.26	121	40
				5.22.~11.7.	71	40
				5.7~9.30	307	40
				7.30~9.26.	36	15
				8.22~11.15.	50	15
				11.10~11.12	13	10
				6.28~8.31.	16	10
				7.20~9.15.	40	10
				6.25~9.27	36	5
				4.13~10.8.	37	12
				8.21~9.13	55	16
				5.1~9.30	47	12
	소 계				1,046	450
2020년	국내	현충시설 등 국내 사적지	독립유공자 후손 등	10.15.	50	15
			청소년 등	11.4~11.7	35	30
			보훈교육원 이수 교원	9.8~11.30	64	76
			청소년, 대학생, 국가 유공자 등 일반 국민	10.30~11.30	169	70
				9.16~12.4	85	35
				9.28~11.22	134	48
				8.31~10.11	78	35
				10.26~11.29	293	35
	소 계				908	344
2019년	국외	일본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2.7~2.10	20	90
		중국		4.11~4.15	18	
		러시아		11.5~11.8	20	
	국외	중국	독립유공자 후손대학생	7.22~7.26	29	177
		러시아	5개교 사관생도	8.19~8.23	24	
		중국	'18년도	6.3~6.7	38	
		중국	보훈연수교원, 창의체험학교 우수교원	6.10~6.14	34	
		중국		7.29~8.2	35	
		러시아	청소년 등	7.25~7.29	31	100
		러시아		8.15~8.19	31	
		중국	100주년서포터즈 (대학생 등)	3.18~3.23	20	35
		러시아	청소년, 대학생, 국가유공자 등 일반국민	4.26~4.30	23	35
		중국		5.8~5.12	31	35
		중국		7.3~7.7	26	35
		일본		7.8~7.12	23	35
		중국		7.13~7.17	27	35

연도	지역		대상	기간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러시아		7.15~7.19	23	35
		러시아		8.3~8.7	22	35
		중국		8.5~8.9	28	35
		중국		8.5~8.10	26	35
		중국		8.18~8.23	21	35
		중국		8.19~8.23	28	35
	소 계				578	787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국외 탐방 현황을 보면 2019년은 578명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나라를 탐방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은 국외탐방의 실적은 없고 2022년에 29명이 미국, 프랑스를 탐방하였으며, 2023년 385명이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을 탐방하였는바, 탐방인원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탐방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일부 국가로 치우쳐 있음.
-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전체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54.6%가 중국, 일본, 러시아에 분포되어 있고, 독립운동사적 가치가 큰 중점사적지의 79.8%가 중국, 일본,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주요 탐방국 위주로 선정하였다는 설명임.
- 그러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을 보면 미국, 멕시코,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의 부재로 탐방국의 대부분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치우쳐 있어 동 사업의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탐방에서 소외된 탐방국의 사적지에 대하여 국가적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고, 소외된 탐방국의 사적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제고를 위하여 국외 탐방국의 다양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

총합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멕시코	카자흐스탄	쿠바	유럽	기타
1,032	483	159	123	69	53	25	13	34	73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2023년도 ‘국내외사적지탐방’ 사업의 선발인원 대비 신청인원 비율을 보면 국외의 경우 평균 경쟁률은 1.74:1, 국내의 교원 탐방 경쟁률은 1: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도 국내외사적지 탐방 신청·선발인원 현황 >

구분	지역	일시	신청인원(명)	선발인원(명)	경쟁률	비고
교원 탐방	국내	1차: 7.26.~7.28.(2박3일)	17	17	1:1	
		2차: 8.8.~8.10.(2박3일)	11	11	1:1	
		3차: 9.20.~9.22.(2박3일)	22	22	1:1	
		4차: 10.18.~10.20.(2박3일)	20	20	1:1	
청소년·청년 탐방	국외 (중국)	1차: 7.3.~7.8.(5박6일)	371	100	1.86:1	
		2차: 7.10.~7.15.(5박6일)		100		
		3차: 9.1.~9.6.(5박6일)	68	30	2.27:1	
	국외 (카자흐스탄)	7.29.~8.4.(5박7일)	38	35	1.09:1	
	국외 (일본)	2.7.~2.10.(3박4일)	20	20	1:1	

구분	지역	일시	신청인원(명)	선발인원(명)	경쟁률	비고
국내 탐방	현장탐방	연중(당일~2박3일)	(93회)	3,449		지방관서 직접 수행
	시설탐방	연중(당일~2박3일)	(151회)	4,441		공모사업

자료: 국가보훈부

- 신청인원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국내외 탐방 정보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탐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 국외 탐방의 경우 중국, 러시아 등 동일 지역의 반복으로 인한 탐방 매력도의 저하, 국내 탐방은 학교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하여 선착순 마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저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신청인원의 저조는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는 등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중국, 러시아 등에 한정되어 있는 탐방 국가를 미국, 유럽지역까지 다양화할 수 있도록 탐방국 및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 국내외 탐방인원도 현재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인스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탐방형태도 숙박형 탐방, 가족단위 탐방 등 탐방 프로그램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참여자의 탐방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전주지중화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미흡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보존 및 전시,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즐겨 찾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체험교육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²⁸⁾ 2023년도 예산현액은 103억 6,300만원으로, 이 중 95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	10,260	-	103	-	10,363	9,583	-	780	9,815
전주지중화사업	563	-	-	-	563	-	-	563	-

자료: 국가보훈부

28) 세부사업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3146-410)

(2) 검토의견

국가보훈부는 ‘전주지중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대문구청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동 사업 추진을 보류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주지중화사업’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함)의 진출입로에 전주 공중선이 3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기념관 경관 저해 및 고압전류로 인한 보행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 공중선을 지중화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은 5억 6,300만원으로 전액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기간은 한국전력 측 신청일로부터 140일 내외이며, 사업대상은 기념관 앞 전주 2기를 지중화하는 것으로서, 공사비 세부내역은 케이블 전선설치 및 제반전기공사 등 본공사비 3억 3,800만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1억 2,400만원, 자동화 공사설치비 1,400만원, 미관개선공사 1,300만원 등 총 5억 6,300만원임.

< 전주지중화사업 공사비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소요액
본공사비(케이블전선설치, 제반전기공사, 토공사, 매립, 철거 등	338
설계용역비	11
감리용역비	113
포장복구비	11
테스트용역비	10
검사비	10
폐기물처리비	10
위치탐사비	11
도통시험비	10
자동화공사설치비	14
미관개선공사비	13
기타부대공사비	12
합계	563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전주지중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2020년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그린뉴딜지중화사업”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한국전력공사에 동 사업 요청시 심의 후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 한국전력공사 50%, 지자체 30%를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임.
- 이에 따라, 2022년 서대문구에서는 기념관 앞 통일로 전주 그린뉴

딜지중화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자체 심의 결과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3순위)로 선정되어 추진이 보류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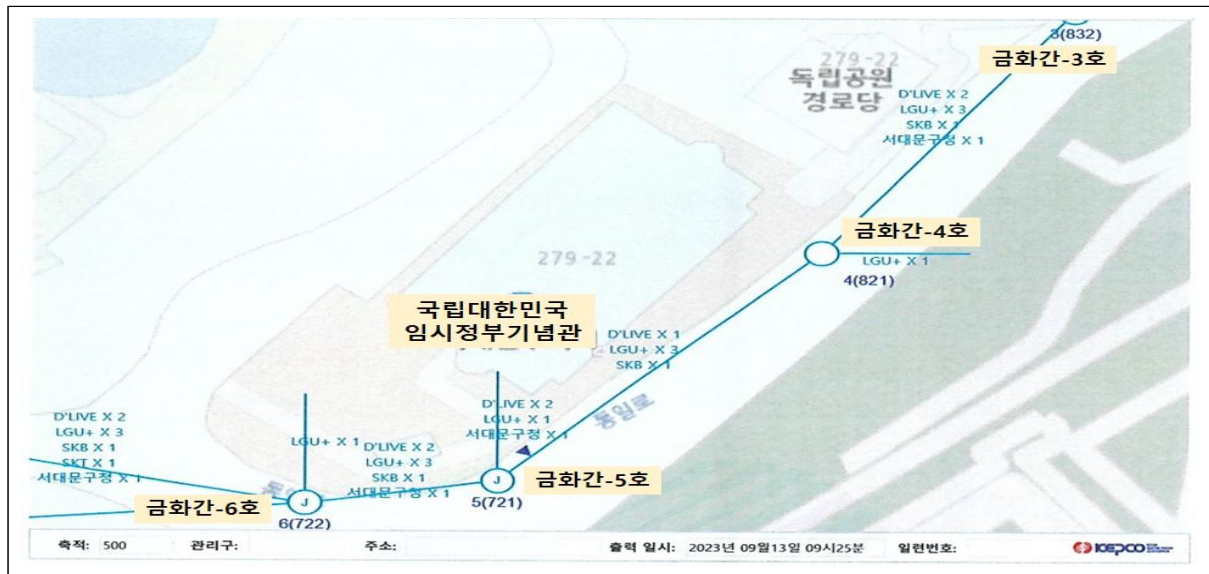
- 전주지중화사업은 국가보훈부가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관련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지중화사업”을 고려하고 기념관 앞 도로인 통일로 전반에 걸친 지중화 규모, 사업비 부담,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및 통신선 등 협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서대문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전주지중화사업 국가보훈부·지자체 추진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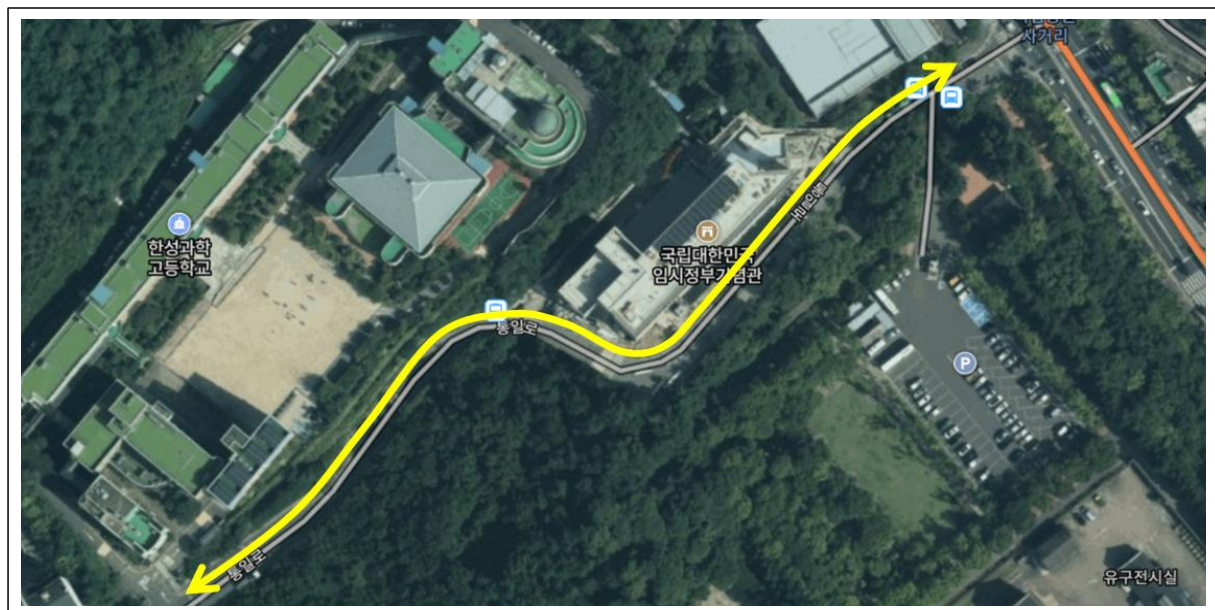
구분	국가보훈부 추진	서대문구 추진
사업명	• 일반지중화사업	• 그린뉴딜지중화사업
지중화 규모	• 전주 2본	• 전주 11본
사업비 편성	• 기념관 전액 부담	• 한국전력 50%, 국비 20%, 시비 15%, 구비 15%
허가 및 협약	• 지자체에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승인 필요 • 지하매설물(가스·수도 등) 이격거리 확보 위한 지자체 검토 필요 • 기념관 주관으로 각 통신사 협약 및 인근 지역주민 협의 추진 • 지자체 통신선 철거 협의 필요	•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자체승인 • 지하매설물 이격거리 자체 검토 • 서대문구 주관으로 각 통신사 협약 및 인근 지역주민 협의 추진 • 지자체 통신선 철거 자체 추진
추가 소요 예산	• 전주 지중화 공사비 외 각 통신사 및 지자체 통신주 철거 및 지중화 공사비 예산 별도 필요 • 공사완료 후 도로복구비 예산 별도 필요	• 기타 부대비용 기 확보

자료: 국가보훈부

<기념관 자체 추진 전주 2본 지중화 공사 배치도>



<서대문구 추진 전주 11본 지중화 공사 사업 구간>



-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지중화사업”에 대한 인지 부족,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 승인 문제, 통신선 철거 협의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전주지중화사업의 추진은 서대문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동 사업 추진을 보류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바, 동 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의 미흡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처리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련 기관과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계획 수립과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전주 지중화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대문구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임.

<서대문구 지중화사업 세부추진계획>

- ① 사업위치 : 통일로 279-79~통일로 279-24 구간 0.31km
- ② 사업내용
 - 지하분야 : 지중관로 설치, 전기·통신선을 땅속으로 지중화
 - 지상분야 : 전주·통신주·가공배전선 철거, 배전기기 설치 등
- ③ 공사내역
 - 철거분 : 전주 11본, 특고압 공장 0.3km 철거
 - 신설분 : 고압케이블 0.44C-km, 개폐기 8대, 변압기 3대

④ 소요예산 : 2,365백만원

- (지중화공사비) 1,900백만원(한전 950백만원, 국비 473백만원, 시비 238.5백만원, 구비 238.5백만원)
- (도로복구비) 465백만원(전액 구비)

⑤ 추진일정

- ('24. 8월) 한국전력공사, 각 통신사 협약 체결
 - *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 체결 완료('24.4.26.)
- ('24. 10월) 지상기기 설치 장소 인근 기관 및 지역주민 협의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협의 예정(10월 중)
- ('24. 10월) 한국전력공사 실시설계 및 사업비 납부
- ('25. 3월) 공사 착공
- ('26. 12월) 관로공사, 전기·통신공사, 부대공사 등 추진

※ 지중화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시행, 도로복구공사는 서대문구에서 시행

9)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사업: 집행실적 저조 및 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내독립기념행사 지원사업’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국내 독립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²⁹⁾ 2023년도 예산현액은 25억 3,200만원으로 이중 22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독립운동관련사업 등지원	3,235	-	-	-	3,235	2,902	-	333	1,815
국내독립기념행 사지원	2,532				2,532	2,207		325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국내 독립기념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적정한 회계 처리 및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9) 세부사업: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3147-413)

□ 최근 4년간 국내 독립기념행사지원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대비 행사 집행은 축소 운영되었고(2020년: 220개→96개, 2021년: 198개→128개, 2022년: 218개→158개), 2023년의 경우에는 회원 고령화로 인한 행사 진행 어려움 등의 사유로 16개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였으며(212개→195개), 1개 단체³⁰⁾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보조금이 미지급되어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음.

< 국내 독립기념행사지원 사업 집행실적 >

연도	행사계획		행사집행		실적 부진 구체적 사유
	예산액	행사개수	집행액	행사개수	
2018년	1,689	255	1,680	230	불가피한 주변여건 악화(겨울철 혹한, 구제역 및 AI발생 등)로 인한 행사 취소
2019년	1,502	200	1,501	200	-
2020년	1,481	220	1,250	96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
2021년	1,893	198	1,813	128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
2022년	2,216	218	2,096	158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
2023년	2,532	212	2,207	195	부정수급 의혹 단체 보조금(200백만원) 미지급 및 16개 행사 취소

자료: 국가보훈부

□ 2023년도 국내 독립기념행사 취소 또는 축소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회원고령화로 인한 행사진행 어려움으로 인한 축소, 사업회

30)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내부사정에 의한 행사 취소, 옥천군 학교의 참여율 저조로 인한 행사 취소, 독감 유행 및 예산 부족으로 행사 취소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음.

< 2023년도 국내 독립기념행사 취소 및 축소 현황 >

연 번	행사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천원)	행사 축소 및 취소 사유
1	제104주년 동경 2.8 독립선언 기념식 및 강연회	(사)한국독립 유공자협회	7,000	회원 고령화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 행사로 축소
2	우사 김규식 박사 추모식	우사김규식박사 기념사업회	3,000	기념사업회 회장 작고에 따른 내부 사정으로 행사 준비 어려워 취소
3	고양시민 나라사랑 문화제	광복회 고양시 지회	1,000	예산 부족으로 행사 취소
4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및 제21회 서경방송 건강달리기 대회	(주)서경방송	5,000	이태원 참사 이후 참가자 보험 의무가입 등 경비 초과로 행사 취소
5	장곡기미3.1독립만세 운동 재현행사	장곡3.1운동 유족회	3,000	4월 발생한 홍성지역 산불로 행사 불가하여 취소
6	대호지, 천의장터 4.4독립만세운동재현 행사	대호지·천의장터 4.4독립만세 운동기념사업회	5,000	4.2. 발생한 당진시 대호지면 산불이 행사 당일(4.4.)까지 진화되지 않아 행사 불가하여 취소
7	예산모현대회	예산모현사업회	3,000	사업회 내부사정으로 사업 추진 불가하여 행사 취소
8	수당고택 음악회	수당이남규 기념사업회	4,000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되어 중복 신청으로 인해 행사 취소
9	문의면 3.1운동 재현 기념 행사	문의면연합번영회	5,000	충북도지사 친일논란 등 부정적 여론으로 행사 취소
10	충민대제 및 검한재 문학제	(재)순국선열김순구선생외25인 기념재단	2,000	옥천군 학교의 참여율 저조로 원활한 행사 진행 불가하여 취소
11	홍암나철선생 얼 찾기 골든벨 대회	홍암나철 기념사업회	4,000	독감 유행 및 예산 부족으로 행사 취소
12	4.8만세운동 추모식 및 재현행사	해보면청년회	5,000	만세운동재현행사에 학생들의 참여가 불가하여 국비 없이 지방비 등으로 행사 축소 진행

연 번	행사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천원)	행사 축소 및 취소 사유
13	김춘배의사 순국추모행사	(사)김춘배의사 기념사업회	2,000	e나라도움 사업신청 불가하여 국비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행사 진행
14	광복음악회	광복회전라북도지부	3,000	광복음악회 지원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 취소
15	제12회 김제청소년나라사랑축제	김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3,000	보조금 미신청 및 정산능력 부족으로 행사 취소
16	익산4.4만세운동 기념행사	익산4.4만세운동 기념사업회	2,000	보조금 부족하여 국비 없이 지방비만으로 행사 축소 진행
17	제9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200,000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미지급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동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한 사유를 보면 사전에 수요 조사를 충실히 하였더라면 일부사업의 경우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안내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집행이 부진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없게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 또한, 2023년도에 실시한 국가보훈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자체 점검³¹⁾ 결과('22년 지원 보조사업 대상)에 따르면 회계부적정 및 목적외 사용이 47건(45,224,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국내 독립기념행사지원 단체인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³²⁾는 기부금 리베이트, 23시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 등 15건을 적발하였고 이중 인건비, 사업대금(앱개발 등)을 지급 후 일정액을 기부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기부금 리베이트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10건, 39,910,000원)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였는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31) '22.12.28. 대통령실 「비영리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32) 설립목적은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선양, 문화활동을 통하여 항일여성독립운동 역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사업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발굴 및 홍보 활동(항일여성 독립운동 815광복절 기념 추모문화제 행사 등)임.

회원수는 69명(임원 8명)으로 국고보조금은 '21년도 2억 5,000만원, '22년도 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3년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미지급함.

< 국가보훈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자체점검 현황 >

□ 점검 개요

- 기간 및 점검반 : '23.1.3.~3.31. / 특정감사팀 3명(5급 1, 6급 1, 7급 1)
- 대 상 : 57개 2,517백만원 보조사업('22년 기준)
 - (점검대상) 최근 3년간('20~'22)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 (점검범위) 1천만원 이상 민간단체 보조금(보훈단체 보조금 제외)
 - * 보훈단체는 매년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

□ 주요 점검사항 * '22.12.29.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결과

- 민간단체 보조금의 불법적 집행 및 낭비요소 등 전면적 실태점검
- 선정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외 사용 등 집중점검

□ 점검 결과 (적발사항) * 현장방문 조사 등 실시

- 선정과정의 적법성 : 특이사항 없음
 - 회계부적정 및 목적외 사용 : **47건 45,224천원**
 - 4·19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 : 32건 3,969천원(국고보조 : '20년 3.9억, '21년 25억, '22년 23억)
 - * (적발유형) 간담회 명목 커피상품권 구매, 식비 과다집행, 23시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 등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15건 41,255천원(국고보조 : '20년 55억, '21년 25억, '22년 2억)**
 - * (적발유형) 기부금 리베이트, 23시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 식비 과다집행 등
 - * (수사의뢰, '23.3.8.) '21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행사비용을 기부금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급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10건 39,910천원)
- : 인건비, 사업대금(앱개발 등)을 지급후 일정액 기부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

자료: 국가보훈부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보조사업의 리베이트로 추정된 기부 세부내역 >

(2021년도, 단위 : 만원)

지급 대상	지급사유	지급액	기부액
ㄱ업체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온라인 전시회 어플리케이션 제작 / 홈페이지 유지보수	5,302	500
ㄴ업체	제7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공모전 영상 제작 / 항일여성독립운동가 학술심포지엄 영상 제작	1,436	600
ㄷ업체	항일여성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영상	4,486	2,000
심사위원(전OO)	문화예술 공모전 심사비 공공조형물디 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50	48
심사위원(이OO)	문화예술 공모전 심사비 공공조형물디 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50	50
심사위원(노OO)	문화예술 공모전 심사비 공공조형물디 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50	30
심사위원(김OO)	문화예술 공모전 심사비 공공조형물디 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50	40
직원(정OO)	급여(8~12월)	1,050	401
직원(김OO)	급여(8~12월)	1,050	122
ㄹ업체	제8회 추모문화제 항일독립운동여성상 동상 제작	4,000 (’22년에 계약)	200 (’21년에 기부)
계		17,524	3,991

* 수사의뢰 당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내역으로, 경찰 수사로 기소 결정된 내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효율적인 ‘국내 독립기념행사지원사업’을 위해 당초 행사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거나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10)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예산 편성 목적과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운용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사업은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및 검증, 사료수집 및 DB구축,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³³⁾ 2023년도 예산현액은 40억 5,800만원으로 이 중 38억 6,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0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4,004	4,004	-	54	4,058	3,869	-	189	1,747
전문사료발굴 분석단 운영	833	833	-	△1	832	768	-	64	857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694	694	-	11	705	704	-	1	708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41	141	-	-	141	141	-	-	182
공적전수조사 연구원 운영	1,197	1,197	-	-	1,197	1,094	-	103	(1,231)
공적검증위원회 운영	129	129	-	16	146	146	-	-	(130)
독립운동사료수집	194	194	-	28	222	222	-	-	(194)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위원회 운영 등 후손찾기 강화	148	148	-	△48	100	100	-	-	(143)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홍보	342	342	-	53	395	375	-	20	(402)
데이터베이스 구축	326	326	-	△5	321	319	-	2	(326)

* 2024년 괄호로 표기한 공적전수조사 연구원 운영 등 6개 내역사업은 ‘독립유공자 등 자료수집 관리’ 세부 사업(3248-346)으로 이관됨

자료: 국가보훈부

33) 세부사업: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3248-345)

(2) 검토의견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증액 요구 사업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증액된 다른 내역사업의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집행방식이므로, 향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증액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후손찾기 강화’ 내역사업은 영주귀국자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및 독립유공자 후손확인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후손 심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후손확인위원회 증회 수당을 반영하여 2022년 예산 5,200만원에서 9,600만원이 증액된 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2023년 국가보훈부 결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편성 예산 1억 4,800만원 중 1억원(67.5%)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됨.

< 2023년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후손찾기 강화 내역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 집행 내역	예산액	집행액
1	후손확인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비품 및 유전자분석 시료 구입 등	53	19
2	미전수 훈장 전시회, 기념품 구입, 후손찾기 안내서 제작·배포 등	81	65
3	국외 후손찾기 현지 출장	14	16
계		148	10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같은 세부사업 내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4,5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사용하였고, 여비 지급기준 인상으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300만원) 충당을 위하여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후손찾기 강화’ 내역사업 증액예산 총액(9,600만원)의 50%에 가까운 4,500만원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내역사업(‘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홍보’) 집행을 위하여 활용하였는바, 이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성 및 집행하는 예산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³⁴⁾
- 국가보훈부는 2023년 동 세부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외 영주귀국 후손 확인뿐만 아니라 국내 후손 찾기 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후손 여부를 확인하는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내 후손 찾기 사업 홍보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음.
- 그러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후손 찾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로 미전수 훈장 전시와 관련한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횟수 및 심사인원의 경우 2022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여 예산

34)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각 비목별로 규정하는 것은 비목에 따른 예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비목별 지침에 맞추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예산안 및 결산 심사의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음.

증액 편성을 통해 후손확인위원회 역할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후손 찾기 사업 홍보 관련 집행 내역 >

연번	세부 집행 내역	집행액 (천원)
1	전시용 훈장 구입	4,559
2	후손찾기 안내서 제작	11,063
3	전시 영상 콘텐츠 제작	9,500
4	미전수 훈장 전시 관련 용역	31,491
5	훈장 전수 및 국적취득 후손 기념품 구입	9,172
계		65,785

자료: 국가보훈부

< 연도별 후손확인위원회 심사횟수 및 심사인원 >

(단위: 건, 명)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심사횟수	1	1	2	9	7
심사인원	29	35	29	183	85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가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했던 금액조차 1,0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예산 추계 또한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관련 예산 요구 내역 >

구분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대비
제작	25천부×3,150원	77백만원	+10백만원
배송	25천부×800원	20백만원	
계		97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달력 제작 예산이 연례적으로 부족하여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달력 제작 관련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았고, 2023년 관련 예산이 2022년 대비 1,000만원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달력 제작을 위한 예산이 연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가보훈부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³⁵⁾

< 최근 5년 달력 제작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부)

구분	예산액	집행액	달력 제작부수	비고
2019년	87	73	32,000	
2020년	87	75	34,000	
2021년	87	77	30,000	
2022년	87	66	24,000	
2023년	77	90	29,000	

자료: 국가보훈부

35) 2023년의 경우도 2022년 대비 발간부수를 늘리지 않았다면 편성 예산액(77백만원)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임.
(동일 단가 3,109원 * 24,000부 = 74.6백만원)

□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3년 결산 설명자료에서 미전수 훈장전시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 3,2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부족분이 아니라 당초 전시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잘못 편성한 것으로 확인이 됨.³⁶⁾

< 미전수 훈장전시회 개최 관련 예산 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12.15.)	독립유공자등 발굴포상및홍보 (3248-345)	210-01	32	독립유공자등 발굴포상및홍보 (3248-345)	210-14	미전수 훈장전시회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12.15.)	독립유공자발굴 포상및홍보 (3248-345)	210-14	1	독립유공자발굴 포상및홍보 (3248-345)	210-01	훈장전시회 훈장 복제본 구입 등 일반수용비 소요 발생

자료: 2023년도 국가보훈부 결산 설명자료 재구성

□ 국가보훈부는 편성 목적과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액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예산 부족분을 위하여 활용되거나 비목이 잘못 설정되는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36)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당초 지자체와 행사물품 구입 등을 통해 훈장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방식은 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이 비목별로 구분되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해명으로 보임.

11) 국립영천호국원 등 확충사업: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지연에 따른 적기 안장 문제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호국원’은 전몰군경·순직군경,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대상으로 하고 있음. 현재 6개³⁷⁾ 국립호국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³⁸⁾ 2023년도 예산현액은 804억 3,900만원으로 이중 614억 6,200만원이 집행되고 153억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6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립호국원 사업 결산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국립영천호국원	8,948	9,898	125	18,971	11,393	5,053	2,524	10,402
국립임실호국원	10,013	6,798	-	16,674	13,915	2,494	265	11,560
국립이천호국원	15,817	11,540	84	27,441	20,623	6,169	649	13,541
국립산청호국원	2,799	-	61	2,840	2,766	1	73	9,334
국립괴산호국원	9,732	1,583	77	11,392	9,723	1,590	80	7,604
국립제주호국원	3,332	-	△211	3,121	3,042	-	79	3,810
계	50,641	29,819	136	80,439	61,462	15,307	3,670	56,251

자료: 국가보훈부

37)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 산청호국원, 괴산호국원, 제주호국원

38) 세부사업: 3250-358, 3250-359, 3250-360, 3250-361, 3250-363, 3250-367

(2) 검토의견

가)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지연에 따른 적기 안장 문제

영천·임실·이천·괴산 호국원 등 4개 확충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바, 보훈대상자들이 적기에 안장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안장하여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를 조성·관리하고 있는바, 부족한 안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립영천호국원 등 5개의 국립호국원을 확충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자 및 잔여 기수를 살펴보면 2024년 5월 말 기준 전체 안장대상 생존자 170,678명 중 90세 이상 안장대상자는 26,956명이고 잔여 기수는 4,836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90세 이상 고령의 생존 안장대상자의 수가 잔여 기수를 22,120명 초과하고 있어 안장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봉안시설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생존자 현황 >

(단위: 명, 2024년 5월말 기준)

구분	계	80세 미만	80~89세	90세 이상
안장 대상 생존자	170,678	115,870	27,852	26,956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호국원 만장예상 시기 및 완공 변경 현황 >

(단위: 기, 2024.5.말 기준)

구분	봉안시설	현재 인장능력	확충 안장규모	잔여 기수	만장 예상시기	당초 사업기간	사업기간 변경
영천호국원	봉안당	53,673	25,000	259	2024년	2021~2023	2021~2025
임실호국원	봉안당	36,912	20,000	2,113	2024년	2021~2024	2021 ~ 2025
이천호국원	봉안당	50,000	50,000	-	만장	2018~2023	2018 ~ 2025
괴산호국원	봉안담등	23,000	23,000	2,464	2024년	2021.5.~2024.5.	2021.5.~2024.6.
산청호국원	봉안담	10,000	11,000	-	2024년	2023.3.~2024.10.	2023.3.~2024.10.
계		173,585	129,000	4,836	-		-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3년도에 추진 중인 영천·임실·이천·괴산 호국원 등 4개 확충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공사가 지연되었는바, 지연 사유를 보면 조달청 설계심의 및 총사업비 확정 기간 소요에 따른 계약 지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시공사 및 관리업체 선정 지연 및 자재 수급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영천 호국원 등 4개 국립호국원 공사 지연 사유 >

구 분	공사 지연 사유	사업 공정률 (`24.6. 기준)
국립영천 호국원	조달청 설계심의 및 총사업비 확정 기간 소요에 따른 계약 지연 등	40.4%
국립임실 호국원	기관협의 지연 및 입찰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 지연 등	70.8%
국립이천 호국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기간 소요(7개월)에 따른 공사 착수 지연 및 기재부 “총사업비 적정성 재검토(‘23.4.~‘24.1.)”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	87.3%
국립괴산 호국원	시공사 및 관리업체 선정 지연 및 자재 수급 지연 등	10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관협의 및 지역 주민 의견 조율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절차를 적기에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모든 호국원의 확충 공사를 2025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만장 예상시기가 국립이천호국원은 이미 만장이 되었고 영천·임실·괴산의 경우도 2024년에 만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천·임실·이천호국원의 완공시기를 보면 2025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사망한 보훈대상자들이 적기에 안장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국가보훈부는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예산의 연례적 이월 및 불용 문제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지역 주민 의사 조율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편, 최근 3년간 국립영천호국원 등 4개 호국원의 이월 및 불용 현황을 보면 이월은 2021년 113억 4,200만원, 2022년 298억 1,900만원, 2023년 153억 6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은 2021년 5억 2,400만원, 2022년 36억 3,200만원, 2023년 35억 1,800만원 불용되었는바, 매년 과다한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주요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예산 이월 및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이월	불용	이월	불용	이월	불용
국립영천호국원	659	138	9,898	1,148	5,053	2,524
국립임실호국원	419	141	6,798	546	2,494	265
국립이천호국원	10,264	46	11,540	569	6,169	649
국립괴산호국원	-	199	1,583	1,369	1,590	80
계	11,342	524	29,819	3,632	15,306	3,518

자료: 국가보훈부

- 이월 및 불용의 주된 이유는 기관협의 지연, 우수 건축물 신축과 창의성 및 예술성 등을 고려한 보다 나은 설계를 위해 설계용역 방식을 일반경쟁에서 설계공모 방식으로 변경 등 입찰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지연, 주민여론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해 주민 반대에 따른 착공 지연 등에 기인한 것임.

< 이월 및 불용 과다 발생 사유 >

구분	이월 및 불용 발생 구체적 사유
국립영천호국원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외기관 협의 지연,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와 재정당국 총사업비 협의과정으로 인해 공사 계약 체결 지연
국립임실호국원	제3충령당 건립사업 계약 기관협의 지연 및 입찰방법 변경(일반경쟁→제안공모)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이월액 발생
국립이천호국원	기관 협의 지연 및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설계단계 다소 지연되었으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기간 소요(7개월)에 따른 공사 착수 지연으로 이월액 발생
국립괴산호국원	시공사 선정 및 건설사업 관리단 지연, 묘역공사 시 암발생 및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초기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액 발생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기관과의 협의 지연, 입찰방법 변경에 따른 지연, 지역 주민 여론 조율 등은 사전에 국가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더라면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의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 지연으로 과다한 예산이 연례적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된 것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12)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제복의 영웅사업 적극적
홍보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은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³⁹⁾ 2023년도 예산현액은 131억 5,900만원으로 이중 119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12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13,764	-	38	△643	13,159	11,910	-	1,249	-
사업추진단 운영	1,252	-	38	-	1,290	1,139	-	151	-
정전 70주년 계기사업	7,257	-	-	△643	6,614	6,299	-	315	-
제복의 영웅들	5,255	-	-	-	5,255	4,472	-	783	-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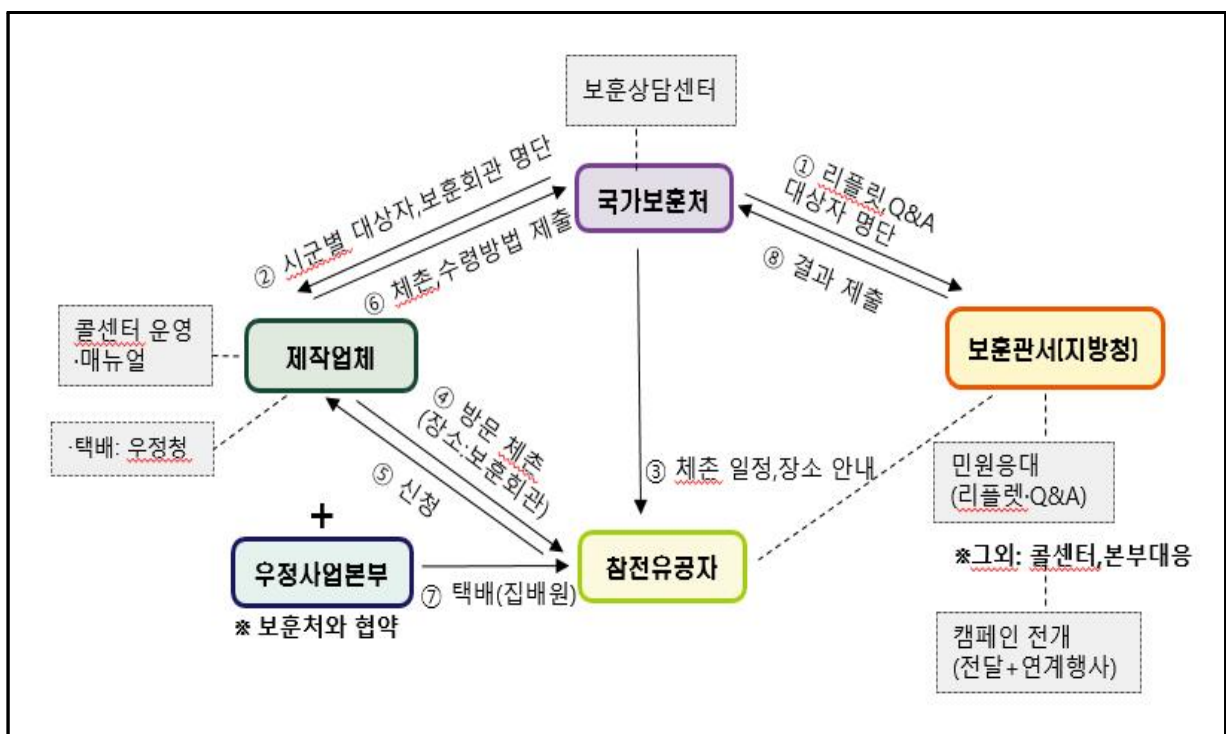
(2) 검토의견

제복의 영웅들 사업의 신청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미인지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9) 세부사업: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4161-417)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제복의 영웅들사업’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의복형 기념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도 예산현액은 52억 5,500만원으로 이중 44억 7,2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제복 지급대상은 2023년 1월1일 기준 살아계신 모든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자켓 및 바지, 넥타이 등의 품목을 우정사업본부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제복의 영웅들사업 추진체계 >



자료: 국가보훈부

- 2023년도 ‘제복의 영웅들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제복 상하의 및 넥타이 단가 산정은 국군장병 피복단가 12만원을 적용하였고, 지급

대상인원은 '22년 6월 기준 6·25참전유공자 인원 5만 8,626명 중 최근 3년간 사망률($\Delta 25.3\%$)을 적용하여 4만 3,794명을 기준으로 예산은 5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제복의 영웅들사업 세부산출내역 >

구분	세부산출내역	세부집행내역
예산안	52억 5,500만원	44억 7,200만원
1인당 단가 (품목)	12만원 (상하의 및 넥타이)	118,800원 (상하의 및 넥타이)
대상인원	43,794명	36,176명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제복지급 대상인원 4만 3,794명 중 신청인원은 3만 6,176명 (4만 3,794명→ 3만 6,176명, 82.6%)으로 82.6%에 불과한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 대상자의 특성상 초고령(평균 연령 92세)에 따른 사망 및 입원,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미신청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1차 신청기간에는 2만 2,290명, 2차 신청기간은 6,192명, 3차 신청기간은 5,314명, 4차 신청기간은 1,540명 등으로 차수가 거듭될수록 신청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바, 이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이 주요원인일 수도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시에 이미 최근 3년간 사망률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부재로 인한 연락

두절, 요양원입소, 병원 장기 입원,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미신청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 제복의 영웅사업 사업추진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신청기간	신청인원	수령인원	집행액
1차	'23.4.10~4.29.	22,290	22,290	2,626
2차	'23.5.1~7.5.	6,192	6,192	768
3차	'23.7.6~10.31.	5,314	5,314	741
4차	'23.11.1~12.20.	1,540	1,540	184
기타 (해외거주 등)	'23.8.10~12.31.	840	840	153
합 계		36,176	36,176	4,472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 계기) 사업’⁴⁰⁾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미인지로 인해 월남참전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관서, 유관단체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미신청자에 대한 신청 안내를 독려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음.

40) 월남전참전 60주년 기념유공자에 대한 예우 표시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제복(상하의 및 넥타이, 모자) 증정

Ⅱ. 기금

1. 보훈기금

1)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2160-430) :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분할 수의 계약 부적정

(1) 사업 및 계획안 개요

□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는 호국보훈의 달, 명절, 연말 등의 시기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문하고,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대상을 시상하는 사업으로,⁴¹⁾ 2023년도 계획현액 13억 7,300만원 중 13억 6,400만원(99.3%)이 집행되고, 9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1,320	1,373	-	-	1,373	1,364	-	9	1,320

자료: 국가보훈부

41) 세부사업: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2160-430)

(2) 검토의견

수의계약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나누어 위문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쟁입찰을 통해 위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위문’ 내역사업은 호국보훈의 달, 추석, 연말 등의 시기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통령, 장관 위문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동 내역사업에는 9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국가보훈부는 동 내역사업의 위문품을 일괄 구매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의 위문품 구매 계약을 살펴보면, 위문품 구매를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였음.
-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서 일괄하여 구매하지 않고, 소속기관별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국가보훈부는 해당 구매건의 수의계약 사유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구매계약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해당 장관 위문품 계약은 총 금액이 각각 4,592만원, 3억 8,396만원이므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수의계약을 위하여 소속

기관별로 나누어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

<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 구매 계약 내역 >

건 명	위문품 또는 사용내역	계약 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수의계약 사유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 구매 (보훈복지시설)	정관장 홍삼 진본	수의	상훈유통	45,92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⁴²⁾ *8개 소속기관별 계약 진행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 구매 (생계곤란 및 1급 중상이자 등)	우리고향 장맛3종세트	수의	뚝배기식 품	383,96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7개 소속기관별 계약 진행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품목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위문품이 선정된 후 장관명의 위문품이 결정되고 있는데, 경쟁 입찰을 추진할 경우 호국보훈의 달 기간 내에 위문품 납품이 어려워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임.

□ 결국, 국가보훈부는 납품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계약 상대자를 반드시 분리해야 할 사유 없이 동일 품목을 나누어 계약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임.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소액수의견적)⁴³⁾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추석 장관 위문품 및 연말 장관 위문품 두 건의 계약 건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이 각각 9,322만원, 7,200만원으로, 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소액수의견적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추석 및 연말 장관 위문품 구매 계약 내역 >

건 명	위문품 또는 사용내역	계약 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수의계약 사유
추석 계기 장관 위문품 구매 (보훈병원 및 보 훈복지시설)	곱창 생 돌 김세트	수의	세종B&P	93,223	여성기업과 체 결 ⁴⁴⁾
연말 계기 장관 위문품 구매 (보훈병원)	양갱선물세트	수의	세종B&P	72,075	"

자료: 국가보훈부

43)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함. 사실상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음.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국가보훈부는 해당 계약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농수산물 음식물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액수의견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수의계약이라고 답변함.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그러나, 곱창 생 돌김세트, 양갱선물세트 등은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업체는(세종B&P)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기념품 등 도소매 업체라는 점에서 소액수의견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문품의 경우 호국보훈의 달, 추석, 연말 등 매년 그 지급 시기가 동일하므로, 경쟁입찰을 통해 위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⁴⁵⁾

45) 국가보훈부는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위문품은 지역안배 및 사회적 이슈(감염병 및 자연 재해 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므로 일반적 구매절차와 달리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사전 진행이 가능한 장관명의로 위문품 중 추석 위문품에 한해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조달입찰로 시범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한 후 단계별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임.

2)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2160-441)

(1) 사업 및 계획안 개요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은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에게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활동지원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⁴⁶⁾ 2023년도 계획현액 479억 6,600만원 중 406억 2,700만원(84.7%)이 집행되고 73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47,966	47,966	-	-	47,966	40,627	-	7,339	43,047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가) 연간 반복적 구매 물품에 대한 경쟁입찰 필요

동일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노인생활용품 구매건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분할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간 구매 수량 전체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46) 세부사업: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2160-441)

□ ‘노인생활지원용품’ 내역사업은 보훈대상자에게 노인생활용품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노인생활지원용품을 일괄 구매하여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동 내역사업에는 8억 7,600만원이 편성, 전액 집행되었음.

□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체결한 노인생활지원용품 구매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연간 1억 3,30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서 소액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업체와 매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분할 수의계약 체결 사례 1 >

(단위: 원)

계약건명	계약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사유
1월 노인생활지원용품 (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 계약	영000	218,500	2023.01.01~ 2023.01.31.	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 ⁴⁷⁾
2월 노인생활지원용품 (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 계약	"	19,273,080	2023.02.01~ 2023.02.28	"
3월 노인생활지원용품 (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 계약	"	12,299,700	2023.03.01~ 2023.03.31	"
4월 노인생활지원용품 (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 계약	"	18,965,900	2023.04.01~ 2023.04.30.	"
5월 노인생활지원용품 (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 계약	"	15,766,600	2023.05.01~ 2023.05.31	"
6월 노인생활지원용품 (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 계약	"	10,500,500	2023.06.01~ 2023.06.30.	"
7월 노인생활지원용품 (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 계약	"	9,806,500	2023.07.01~ 2023.07.31	"
8월 노인생활지원용품 (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 계약	"	8,454,500	2023.08.01~ 2023.08.30	"

계약건명	계약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사유
9월 노인생활지원용품 (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8,534,800	2023.09.01~ 2023.09.31	〃
10월 노인생활지원용품 (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8,412,900	2023.10.01~ 2023.10.30	〃
11월 노인생활지원용품 (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7,584,900	2023.11.01~ 2023.11.31	〃
12월 노인생활지원용품 (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14,071,300	2023.12.01~ 2023.12.31	〃
합계			133,889,18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부는 동일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해당 물품 구매건을 분할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국가보훈부는 연간 2억 90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서 여성기업과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업체와 매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역시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분할 수의계약 체결 사례 2 >

(단위: 원)

계약명	계약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 사유
3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썸질기 외) 구입	수의계약	시00000	12,106,000	2023.03.01~ 2023.03.31	여성기업과 체결 ⁴⁸⁾
4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썸질기 외) 구입	"	"	47,704,000	2023.04.01~ 2023.04.30.	"
5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썸질기 외) 구입	"	"	34,173,000	2023.05.01~ 2023.05.31	"
6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썸질기 외) 구입	"	"	22,262,000	2023.06.01~ 2023.06.30.	"
7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썸질기 외) 구입	"	"	15,722,000	2023.07.01~ 2023.07.31	"
8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썸질기 외) 구입	"	"	14,305,000	2023.08.01~ 2023.08.30	"
9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썸질기 외) 구입	"	"	13,469,000	2023.09.01~ 2023.09.31	"
10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썸질기 외) 구입	"	"	13,290,000	2023.10.01~ 2023.10.30	"
11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썸질기 외) 구입	"	"	14,891,000	2023.11.01~ 2023.11.31	"
12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썸질기 외) 구입	"	"	21,897,000	2023.12.01~ 2023.12.31	"
합계			209,819,00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노인생활지원용품 구입 계약은 2021년까지
5개 지방보훈청에서 각각 구입하였으나,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역간

4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품질격차가 발생하여 2022년에 본부 일괄계약방식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이를 반려함에 따라 해당 물품 구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조달청의 반려사유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⁴⁹⁾을 통해 구입하거나 자체입찰을 하라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반려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정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입찰을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⁵⁰⁾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쟁이 가능한 한 건의 입찰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집행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연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간 구매 수량 전체⁵¹⁾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분할 수의계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이용(수요)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수요기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51) 물량 예측 곤란 시에는 단가계약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는 과도한 국외출장 경비 집행 부적정

‘복지사업운영’ 사업에 편성된 국외출장을 수행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되는 집행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은 보훈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활동지원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가복지지원’ 내역사업과 ‘노인생활지원용품’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등 12개의 비목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에는 국외업무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국가보훈부는 ‘복지사업운영’⁵²⁾ 사업에 편성된 국외출장인 ‘선진 요양시설 견학 및 재택개호(지원)서비스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⁵³⁾ 을 2023년 12월 수행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추가로 사용하였음.

52) 세부사업 : 복지사업운영(7179-200)

53) ■ 출장목적

- 일본의 다양한 요양시설 및 재택개호(지원)서비스 기관 등을 방문하여 고령 대상자 관리 체계, 특화 서비스 제공 실태 등 현장 답사 및 자료 수집
- 우수 요양시설의 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를 벤치마킹하여 보훈요양원 건립 및 노후화된 보훈복지시설 리모델링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출장일정 : 2023.12.19.(화)~12.22.(금)(3박 4일)

■ 출장지 : 일본 도쿄

■ 출장자 : 4인

- 국가보훈부는 출장자 4인의 일본 출장 시, ‘복지사업운영’ 사업의 국외여비 710만원을 지급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차량 임차, 현지가이드 및 통역비, 방문비를 별도로 집행함.

< 2023년도 일본 국외출장 경비 집행내역 >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비목	내용	금액	비고
복지사업운영 (7179-200)	국외여비 (220-02)	항공운임	2,586,620	
		여행자보험료	75,960	
		체재비	4,485,810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2160-441)	일반수용비 (210-01)	차량임차료	900,000	3일분
		현지가이드비	1,200,000	3일분
		방문비	1,500,000	시설견학 및 상담비 (방문기관 당 50만원)
총계			10,748,390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 자료 재구성

☐ 이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된 사업비를 당초 편성되지 않은 국외출장에 집행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⁵⁴⁾에 위배됨.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복지사업운영’ 사업에 편성된 국외여비가 부족하여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54)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재가복지지원’ 사업에서 행정적 목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일반수용비 (210-01)’ 비목에서 집행하게 되었으나, 예산 회계 운영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는 입장임.

□ 한편, 상기 ‘선진 요양시설 견학 및 재택개호(지원)서비스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에서는 차량임차 비용을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국외여비는 필요 시 열차비, 승용차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출장의 경우 국외여비가 아닌 일반수용비에서 차량 임차료를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더불어, 차량 임차료를 별도 집행한다 하더라도 ‘일반수용비’(210-01)가 아닌 ‘임차료’(210-07)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집행이라 할 수 있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의 일반수용비·임차료 관련 규정 >

구 분	내 용
일반수용비 (210-01)	210-01 일반수용비 (1~6. 생략)

구 분	내 용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u>업무대행수수료</u>,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 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화물 운송료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에, 기업특별회계에서 물자 처리관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운영비(210-16)목에 계상 - 국선변호사 및 수입·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전검토비 - 교육훈련시 초빙강사료
임차료 (210-07)	210-07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u>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u> -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에 따른 임차료 등

자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도심지역이 아닌 시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차량 임차가 필요했으며, 차량의 단순 임차가 아닌 출장 일정 전반 과업(차량, 운전, 통역, 가이드 등)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로

보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는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차량 임차는 업무대행이 아닌 단순 시설에 대한 임차이므로 업무대행 수수료로 볼 수 없으며, 동 출장은 국외 현지정부·재외공관 인사 접견, 기념행사 참석 및 대외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출장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시설 견학으로, 운전원을 포함한 차량 임차와 가이드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출장이라 보기 어려움.

□ 종합하면, 국가보훈부는 국외출장 시 국외업무여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일반사업비를 활용하여 과도한 출장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의 비목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3) 보훈요양원 건립(2161-443) :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1) 사업 및 계획안 개요

□ ‘보훈요양원 건립’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요양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복권기금 재원을 전입해 보훈 대상자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⁵⁵⁾ 2023년도 계획현액 68억 3,9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보훈요양원 건립	6,839	6,839	-	-	6,839	6,839	-	-	3,365
수원보훈 요양원 증축	2,339	2,339	-	-	2,339	2,339	-	-	3,018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4,500	4,500	-	-	4,500	4,500	-	-	347

자료: 국가보훈부

55) 세부사업: 보훈요양원 건립(2161-443)

(2) 검토의견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국가보훈부는 집행 실적과 관계없이 편성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는데,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의 계획액 편성을 통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중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내역사업은 수도권(수원, 남양주)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수원요양원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내역사업은 현재 보훈요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충청북도 지역에 보훈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임.
- 그런데, 동 사업의 2023년 결산내역에 따르면,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예산 23억 3,900만원과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계획액 45억원이 전액 집행(보조금 교부)되었지만, 2023년 교부액에 대한 수원보훈요양원 사업의 보조금 실집행액은 5억 8,300만원(4%)에 그쳤으며, 특히 충북권 보훈요양원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액 전액이 연내 실집행되지 못했음.

< 2023년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 계획액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2,339	2,339	583	4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4,500	4,500	-	0

주) 실집행액은 2023년 교부액에 대한 실집행 금액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실집행 실적 부진에 대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 수립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각각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수원보훈요양원 증축사업의 실집행 부진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 확보 및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재정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전체 일정이 지연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의 경우에는 건립 부지를 충청북도 내 지자체 중 영동군으로 결정하였으나, 영동군에서 추천한 후보지 답사 결과 적정 부지 선정에 차질이 있었으며, 최종 선정된 부지가 민간 소유로 계약 과정에서 부지 가격에 대한 협상으로 인해 실집행이 불가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는 당초 국가보훈부의 사업계획이 미흡하게 수립되었으며,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의 경우 2022년 1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건립 및 운영방침 조정 요청이 있었고, 이에 사업규모 재검토 및 사업비 증액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3년 계획액을 설계비 3억 2,400백만원 외에 공사비 20억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까지 포함하여 편성하였음.⁵⁶⁾

○ 충북보훈요양원 건립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 및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건립 보상비 23억 7,200만원, 설계비 20억 8,400만원, 시설부대비 4,400만원을 반영하여 계획액을 편성하였으며, 결국 부지선정 과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획액 전액이 집행되지 못했음.

□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⁵⁷⁾은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56) 설계공모 보상비 7,800만원, 설계용역 선금 4억 9,000만원 등 설계관련 비용 총 5억 8,300만원만 실집행됨.

5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에서는 연내에 설계(계약기간 : '23.8.30.~'24.7.24.)가 완료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20억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충북요양원 사업의 경우에는 부지선정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3년 12월 22일에 건립 보상비, 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반영된 보조금 전액을 한번에 교부함으로써 보조금 전액이 이월되었는바,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위배되는 보조금 교부임.

< 2023년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 예산 교부 및 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획액	①집행 (교부)액	②전년도 이월액	③=①+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차년도 이월액
수원보훈요양원	2022	495	495	-	495	5	490
	2023	2,339	2,339	490	2,829	583	2,246
충북요양원	2023	4,500	4,500	-	4,500	-	4,500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관계기관 간 협의, 설계 및 공사 등 각종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규모의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연내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것임.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사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보훈병원 진료”사업 중 ‘지방(광주) 요양병원 개원 추가 소요’ 내역 사업에는 17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2억 7,100만원(15.1%)만 집행되고 15억 2,400만원은 국비 진료 등 다른 예산소요 부족분 충당에 활용되었음 -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중앙요양병원의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신설병원의 경우 개원 후 병상 가동 활성화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임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설병원의 개원 후 병상가동률 추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 부산요양병원은 '24.3월 개원하였으나, 광주요양병원의 2023년 결산실적(10억원) 및 신설병원 정상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5월말) ○ 조치완료일 : '24년 5월 31일
(2) 법령에 부합한 계약 체결 필요	○ [지적사항] 대구재활센터 건립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동사업이 계속비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계속비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러한 부적정한 계속비 계약 체결은 대구재활센터 건립사업 뿐만 아니라 이미 건립된 부산재활센터 및 대전재활센터 건립사업에서도 발생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체결한 계약을 계약변경 등을 통하여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대구재활센터 건립사업 계약 장기계속 계약으로 변경 완료 ('23.11.14.) ○ 보훈공단 본사 및 병원 시설업무 담당자 대상 계약 전문가 교육 및 워크숍 실시('23.11.21.) ○ 향후에도 보훈공단 건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계약 체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1월 21일
(3) 신규사업 편성 시 면밀한 예산 추계	○ [지적사항] “대구보훈병원 주차장 증축”사업은 구조안전 검토비 9,600만원과 설계용역비 4,700만원, 총 1억 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설계용역비 4,700만원이 집행되었을 뿐 편성된 예산의 74.6%를 불용하였음	○ 향후 신규 건립사업 예산 편성 시 타당성용역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사전 예측을 면밀히 하여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9월 15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필요	- 구조안전 검토비 9,6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신규사업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예산 집행 부진이 없도록 노력할 것	※ 대구보훈병원 주차장 증축공사 완료 ('23.9.15.)
(4) 취업지원 노력도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지적사항] 평가는 평가 자체보다 이후 평가내용을 반영한 환류 과정을 통해 적절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훈지청별 사업담당자들의 취업지원 공헌 정도를 적절히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취업지원 노력도 평가 시 취업지원 공헌 정도가 변별력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지표를 수정·보완할 것	○ '24년도 소속기관 BSC 성과지표인 '취업지원 노력도' 평가항목 개선 - '취업지원 목표실적 달성도' 및 '취업능력 개발지원 노력도'의 가중치 조정, 가·감점 항목 변경 등 성과지표 개선 ○ 조치완료일 : '24년 7월 19일 * 2024년도 자체 성과평가 운영계획 수립·시행 통보(혁신행정담당관실)
(5) 한국독립 운동사연구 연구소 연구성과 저조 및 조직기능 조정 필요	○ [지적사항] 최근 4년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성과물을 보면, 독립운동사 연구의 핵심 사업인 학술연구총서 6편, 한국독립운동사 연구(논문집) 22편 등 총 28편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료총서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보고서 등 독립운동사 기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이 36권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어 핵심연구사업의 성과는 미흡함. 또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독립운동사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연구직들이 고유업무인 연구업무 외의 다른 행정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연구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3~5년 단위의 독립운동사 장기심화연구 과제를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그간 인물·사건 중심으로 추진하던 단발적 연구에서 탈피하여, 독립운동사 전반을 망라하는 거시적 연구의 기반 마련 ○ 조직기능 조정의 경우, 현행 연구소의 직군 및 사무분장 편성 현황 등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성과 진작을 위한 합리적 인력 운용(안)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 진행 중(5.27.~)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독립기념관)는 학술활동 및 연구발간 집행 실적제고 및 핵심연구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 기반 확대를 위해 연구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관 내 인력을 재배치할 것	○ 조치예정일 : '24년 8월 31일 - 연구소 조직진단 결과 및 인력 재배치 등 운용(안) 마련
(6)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부적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필요	○ [지적사항] 국가보훈부는 정부기념행사 추가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해 보훈기념행사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현충시설공사비 낙찰차액 2억 1,5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그런데 현충시설공사(국가보훈광장조성사업) 예산을 성격이 전혀 다른 보훈기념행사에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한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훈기념행사를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향후 보훈기념행사 예산편성 시 정부기념행사별 소요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예산 반영과 효율적인 보훈기념행사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 '23년 정부기념행사 예산 증액 편성하여 이·전용 없이 편성된 예산 내 집행하여 내실있는 기념식 거행 * 정부기념식 : '22년 2,119 → '23년 2,424백만원으로 증액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7) 일부인용 및 조정 구분 등 행정심판 처리 현황 관리 필요	○ [지적사항]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인용률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고, 인용률이 2021년과 2022년 약 4% 수준으로 나타남 -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훈관련 행정심판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접수 및 처리(심리·의결) 건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인용률을 국가보훈부와 달	○ 시정요구 내용대로 통계자료 작성 방식을 즉시 변경하여 2023. 6. 19.부터 수정된 방식의 통계자료로 홈페이지 게재 중 ○ 조치완료일 : '23년 6월 19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리 일부인용과 조정 건수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시점 및 분류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전부인용만을 인용률에 포함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인용과 조정을 포함하여 인용률을 산정함에 따라 보훈관련 행정심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 - 각 기관에서 동일한 통계자료를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통계의 분류기준이 달라 서로 다른 통계자료를 통해 주장하게 되는 것은 보훈행정의 신뢰도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결과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인용과 조정 건수를 구분하여 관리할 것																										
(8)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수납률 향상 노력 필요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지적사항]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의 정수결정액이 58억 5,400만원인데 수납액은 13억 8,100만원으로 수납률이 23.6%에 불과함 - 특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고 환수할 필요가 있음 <2022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 <th>유형구분</th> <th>정수 결정액</th> <th>수납 액</th> <th>불납 결손 액</th> <th>미수 납액</th> </tr> <tr> <td>부정수급¹</td> <td>3,252</td> <td>844</td> <td>132</td> <td>2,276</td> </tr> <tr> <td>행정착오²</td> <td>677</td> <td>149</td> <td>-</td> <td>528</td> </tr> <tr> <td>기타³</td> <td>1,925</td> <td>388</td> <td>7</td> <td>1,530</td> </tr> <tr> <td>합계</td> <td>5,854</td> <td>1,381</td> <td>139</td> <td>4,334</td> </tr> </table> 1) 타인공적 도용, 이중호적, 이혼, 국가유공	유형구분	정수 결정액	수납 액	불납 결손 액	미수 납액	부정수급 ¹	3,252	844	132	2,276	행정착오 ²	677	149	-	528	기타 ³	1,925	388	7	1,530	합계	5,854	1,381	139	4,334	○ 과오급금 수납 실적 제고 방안 - 법령 개정·시행('23.7월) · 최대 5년 범위 내 분할납부제 도입 · 납부 기피자에 대한 연체금 징수 - 집중 회수기간 연1회 운영 - 소득·재산조사 수시 실시 및 강제징수(압류 등) 이행 ○ 부정수급 등 과오급금 관리 방안 -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등 활용, 신
유형구분	정수 결정액	수납 액	불납 결손 액	미수 납액																							
부정수급 ¹	3,252	844	132	2,276																							
행정착오 ²	677	149	-	528																							
기타 ³	1,925	388	7	1,530																							
합계	5,854	1,381	139	4,334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자 아닌 사람과 재혼(사실상 혼인), 범죄, 사망신고 지연 및 은폐 2) 행정기관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경우, 수급권 소멸된 경우 착오 지급, 지급액 착오 확정 등 3) 군경기록(요건)변동, 상이등급 하락, 단순 신고지연 등 ○ [시정요구사항]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수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상변동 실시간 확인 -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등) 협업을 통한 신상조사 실시 -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연계('23.11월)로 범죄사실 확인 지연 방지 -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 이자 부과, 상속인 환수처분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시행 - 형사고발, 강제징수 등 적극 실시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9) 보상금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보상금 지급대상인원 추계가 미진하여 매년 이·전용을 통해 다른 사업에 집행함 -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추계인원은 192,964명이었으나, 실제 지급인원은 189,800명으로 줄어들어 351억 5,300만원을 이·전용하고 353억 1,100만원을 불용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보상금 지급인원의 추계 정확성 제고 - 보훈급여금 지급 추이, 관련 제도 변경(고엽제 후유증 질병 추가) 등 데이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증감률을 적용하여 보상금 지급인원 추계 정확성 제고 - '24년 보상금 예산인원 추계시 '22년 추계인원 대비 △0.8% 감소분을 반영하는 등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고엽제 후유증 추가인원 2,073명 반영) * '22년 추계인원 192,964명 → '24년 예산인원 191,448(△1,516)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10) 생활조정 수당 추계방식	○ [지적사항] 생활조정수당은 지급인원 증가추세가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하여 연례적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계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자 미신청으로 수급에서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있음	○ 생활조정수당 지급인원의 추계 정확성 제고 - 생활조정수당 지급 인원 추이, 관련 제도 변경(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개선 및 사각지대 방지 철저	-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을 10,745명으로 추정했으나 13,795명에 대해 수당지급 ('22년) -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을 5,728명으로 추정했으나 3,199명에게 수당지급한 가운데 사각지대 발생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인원 증가의 요인을 분석하고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계 방식을 개선하고, 보훈 안전망 구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히 매진하여 보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계 정확성 제고 - '22년 추계인원(10,745명) 대비 '24년 예산인원은 100.5% 증가한 21,540명으로 추계(부양의무자 노인기준 폐지인원 포함) ○ 저소득 보훈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3.11.) - 우정사업본부와 MOU를 체결해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에 등록된 저소득 국가유공자 800명 대상 실태조사 시범사업 실시 완료 - 올해 2,000명 대상으로 시범사업 확대 시행 (4월 예정)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11)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 부적절한 집행 및 정산보고 서 작성 관리 미흡 개선 필요	○ [지적사항] 2022년 '보훈단체운영' 사업과 관련, 보훈단체의 집행이 부적절하거나 정산보고서 작성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남 - '보훈단체운영' 사업은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상 보조사업 기간과 집행일자 불일치, 일반수용비로 차량 구입 및 세금납부, 집행잔액 금액표시 불일치, 지부(지회)로 재교부한 금액의 사용내역 누락 등 사례가 있었음 ○ 국가보훈부는 ① 보조금이 비목별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② 정산보고서상 집행잔액이 일치하게 나타나도록 조치하며, ③ 재교부한 보조금의 정산	○ 보훈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시 비목관리 등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시달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감독 강화 ○ 정산보고서상 총괄분 집행잔액과 비목별 집행잔액이 일치하고, 재교부한 내용도 명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해 분기별 보훈단체 운영비 교부시 지적이 있는 내용의 관련 지침 등을 함께 안내함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내역도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부적절 집행 및 정산보고서 작성 관리 미흡을 개선할 것, 단체 선양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 보훈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안내('24.06.27.) ○ 조치완료일 : '24년 6월 27일
(12) 지방보훈 회관 건립 사업선정 시 추진가능 성 점검 철저	○ [지적사항] 동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사업추진 지연이나 건립 포기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교부되지 않고 불용되는 사례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향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요건들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신규 사업지역 준비상황 및 신규, 계속 지역 보훈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매월 진행사항 점검 철저 ○ 준비된 지자체가 선정되어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보훈회관 건립지원 지침 개선방안 마련('24년 4월) ○ 조치일 : '24년 4월 17일
(13) 위탁병원 지정 절차의 지연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지적사항] 2022년도 위탁병원 지정 확대 사업은 당초 상반기에 지정 절차를 마치고 7월경부터 진료를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모집절차 지연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연도 내에 진료를 개시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진료비 예산이 대부분 불용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향후 위탁병원 지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유의할 것 - 정치적 행보를 지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면밀히 사업을 관리할 것	○ 위탁병원 지정절차 개선하여 제도 신속성 및 공모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23.4.27., '23.10.27.) ○ 조치완료일 : '23년 10월 27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4) 제대군인 의료지원 예산 실소요액 반영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은 매년 관행적으로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국회의 지적*에도 시정이 안 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처는 적정 진료단가를 반영하고 진료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제도개선)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예산 편성 시 실소요액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매년 위탁병원 진료 내역사업이 실소요액에 비해 부족하게 편성되고 있음. '25년 예산 편성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정 진료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15) 임시정부 기념관 운영개선 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지적사항] '자료수집 및 연구'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자료·유물 구입 등에 사용되나 집행이 저조 - 2022년 자료수집 및 연구 명목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11억 7,300만원 중 7억 6,200만원만 집행하고 4억 1,100만원 불용 - 개관 초기 자산취득비의 과다한 불용은 기념관의 콘텐츠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자료수집 및 연구사업의 자산취득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콘텐츠를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료, 유물을 수집하거나 매입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자료(유물)의 수집 및 매입 실시 ① 자산취득비 관리 철저('23년 집행을 100%) * '22년 대비 수집량 480% 증가(241점→1,158점) ② 공격적인 자료(유물) 구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 구입 기회 증가, 구입 공고 신문사 등 언론매체 홍보 강화 등 ③ 양질의 자료(유물) 수집으로 풍부한 콘텐츠 생성·확산 - 임정 활동 당시 자료 등 임시정부 관련 자료 집중 수집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유엔화지기념첩, 임시 의정원 결의안 등 수집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임시정부기념관 운영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	- 기념관 전시 활용으로 임시정부 일반 국민의 이해 및 관심 제고 * '23년 특별전('물결과동'전)에 독립선언서 LP판 등 다수 전시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16)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사업관리 부실에 따른 이월 반복 문제	○ [지적사항]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념관 맞춤형 누리집 개편 용역사업 계약금액 2억 600만원 중 1억 300만원이 이월됨 -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당시에에도 세부사업의 예산 이월에 관한 지적*이 있었으나 재차 이월 - 국가보훈부의 행정 노력에 따라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였다면 위 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 “보훈처는 재정문란 행위 근절 차원에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무분별한 사업비 변경이나 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2021회계연도 개관식 행사대행 일반용역비 결산내역 : 1억 5,000만원 중 1억 3,400만원 이월, 1,600만원 불용(낙찰차액)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당시 예산 이월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를 개선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	○ 2023회계연도 이월사업 없음 (연도 내 사업 완료) ○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및 철저한 사업관리 등 행정적 노력 강화 - 전직원 대상 '예산 집행 철저' 문서 시행 등 교육 실시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17) 보여주기 식	○ [지적사항] 국가보훈부의 최근 5년간 정부기념행사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행사가 취소된 2020년도를 제외하고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	○ 코로나-19 이후 참석 규모가 다시 대 규모로 확대되고, 물가 상승 등 비용 인상 요인에 비해 정부기념행사 예산은 그동안 10여년 가까이 제자리였던 상황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정부기념 행사 사업의 연례적 전용·조 정 지양	을 통해 증액하여 추진하였음 - 특히, 국가보훈사업 자체의 내실을 다지 기보다는 윤석열대통령 취임 이후 참여 한 4·19혁명 기념식, 5·18민주화운동, 현충일 추념식 등에서 보여주기식 외부 행사에 치중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기념행사별 로 일정한 사업추진 체계와 소요재원을 설정하고,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 록 하며, 대통령 참석 등 특이 소요예산 도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등 과 다한 예산의 전용이나 조정을 지양할 것	으로 본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정부기 념행사를 거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 나,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하여 '23년 정부기념식 예산 증액 편성 * 정부기념식 : '22년 2,119 → '23년 2,424백만원으로 증액 - 그 결과 '23년 정부기념식을 이·전용 없이 편성된 예산 내 집행하여 내실 있는 기념식 거행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18) 국립호국 원 확충사업 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 [지적사항] 2022년도에 추진한 4개 국립 호국원의 확충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공 사가 지연되어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이 월되었음 - 국립호국원의 80세 이상 생존 안장대상 자 수(55,118명)는 잔여기수(16,472기)를 초과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안장시설 부 족 문제 현실화 가능성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국립호국원 확충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추가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피산(2.3만기) '24년 7월 준공, 산청(1만기) '24년 하반 기 확충공사 완료 예정 * '25년 추가로 9.5만기 준공 예정, 이천 ('25. 2월, 5만기), 영천('25. 2월, 2.5만 기), 임실('25. 2월, 2만기) ○ 조치예정일 : '25년 3월 31일
(19) 균형 있는 국제보훈 교류 행사 추진 필요 등	○ [지적사항] - 국제보훈교류행사가 특정국가에 편중 되어 실시됨 · 동 세부사업의 2022년 국외여비 지출 액 2억 8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이 미국 출장에 집행 · 미래평화국제학술회의도 추모의 벽	○ 향후 보조사업 시행 시 행사의 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더욱 균형있는 국제보훈교류 행사가 되도록 하겠음 ○ 또한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은 법 취지에 맞춰 초청 대상을 면밀히 검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준공식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됨 - 유엔사군무장병 초청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함 · 2022년‘유엔참전용사 및 유엔사군무장병 등 재방한 초청’사업으로 21억 2,300만원(유엔사군무장병 초청관련 3억 300만원)이 집행 ·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류협력사업이나, 유엔사군무장병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거가 미약함 ○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제보훈교류행사와 부서별 국외여비를 특정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집행하고,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은 법 취지와 근거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행하며,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후 보훈부 행사와 연결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 국가보훈부는 정치 편향된 국제보훈교류행사 실시를 지양하고, 사업비 총액만 작성한 후 행사주관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 행사를 보훈부 주관 행사와 연결하여 집행토록 하는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토하여 추진 하겠음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20) 국가유공 자등 친환경차 량	○ [지적사항] 동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이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철용차량 이용자에 대한 사전수요조사가 없었고, 구입비 및 연료비 지원에 따른 친환경차량 구매유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됨	○ 친환경 차량 지원사업의 2024년 예산은 73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도 친환경 차량 이용 증가율 추이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겠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구입비· 연료비 지원 추계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 과다 또는 과소 책정 방지 를 위한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	* '22년 816백만원 → '23년 816백만원 → '24년 734백만원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21) 보훈원 및 보훈복지 타운의 입주율 및 활용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의 낮 은 입주율과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재건축, 리모델링, 용도 전환 등 근본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의 입주율과 활용도를 개선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원·보훈복지타운 대상확대 및 자격 요건 완화 등을 추가 검토 -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23.7월)으로 보 훈보상대상자 보훈원 입소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하였음 ○ 재건축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5년 연구용역 추진 -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해 '25년 연구용역 예산 요구('24년 5월)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6년 사업 추진 * 보훈복지타운('96년), 보훈원('97년) 준공, '26년 이후 재건축 가능 ○ 조치완료일 : '24년 5월 31일
(22) 민간단체 의 보조금 부정집행 시정조치 필요	○ [지적사항] 국가보훈부의 최근 3년간('20 ~'22)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중 1천만 원 이상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결 과 일부 기관에서 부적정 집행 내역 47 건 4,522만원이 적발됨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항일여성독립 운동기념사업회 15건 4,125만원 * 기부금 리베이트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	○ (관리감독 강화) 외부 전문업체 용역계 약을 통한 민간단체 보훈기념행사 컨 설팅 위탁 실시로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 '23년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모니터링 등 컨설팅 실시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시 모니터링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급 의혹으로 수사의뢰(3.8.) : 인건비, 사업대금(앱 개발 등)을 지급 후 일정액을 기부받아 운영자금 사용 관련 - (보훈기념행사) 4·19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 32건 396만원 ○ [시정요구사항] 민간단체 보조금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개선하고, 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것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 ‘24년에는 모니터링 대상을 더 확대하여 사업계획, 집행, 정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 등 관리감독 강화에 노력 * (’23년 1천만원 이상 지원사업 → ’24년 3백만원 이상 지원사업) ○ (부정수급 시정 조치)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15건, 4,125만원에 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수사의뢰(’23.3.8.), 검찰송치(’23.10.9.) 및 불구속 기소(’24.5.13.) ※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의거 보조금 환수 등 조치 예정 - (보훈기념행사) 회계 부적정 및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 된 4·19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 32건 396만원에 대해 소명자료 및 의견서 검토 후 적발 유형 및 금액 변경(11건, 98만원) 완료,국고보조금 일부 취소 및 환수 사전 통보 완료(3.18.),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및 제재부가금 산정 완료(4.17.),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고지서 발급 및 수납(5.20.), 원금 및 이자 고지서 발급 및 환수 완료(7.2.)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